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김은영·유철인·허학영·심숙경·이선경 지음
MAB한국위원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김은영·유철인·허학영·심숙경·이선경 지음
MAB한국위원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머리말 · 5

평화를 실현하는 곳, 생물권보전지역 · 7

김은영(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청년팀장)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평화의 섬과 해녀문화 · 19

유철인(제주대학교 인류학 교수)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 · 37

허학영(국립공원공단 선임연구위원)

국경을 초월한 생태평화 협력의 장, 접경생물권보전지역 · 53

심숙경(국립생태원 전시교육본부장, 유네스코 국제생물보전지역자문위원회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 73

이선경(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유네스코 헌장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네스코는 지적 협력과 연대 속에서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설립된 유엔산하 국제기구입니다. 유네스코는 일찍이 인류는 하나의 종(種)으로서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1971년 인간과 생물권(MAB) 사업을 시작했으며, 자연뿐만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고려하는 ‘생물권’이라는 용어를 국제사회에 처음 도입하는 등, 세계 보호지역 관리와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특히, MAB에서 제시한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자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으로, 유네스코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장려하여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말 기준으로 129개국 714곳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세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도 1982년에 설악산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에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에 이어 2019년 지정된 강원생태평화 그리고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까지 차근차근 그 숫자가 늘어 총 8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강원생태평화’와 ‘연천 임진강’이 2019년에 열린 제31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에 관한 비전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동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고, 평화에 기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과 가능성을 조명하였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자연과 인간, 국가 간, 인간 내면의 평화에 기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유네스코 회원국에 관심을 확산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연구’에서는 ‘평화’의 시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바라보며, 평화에 기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 자연과 인간 간 평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국가 간 평화 등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를 연계하는 담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더 나아가 평화 증진을 위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이 2021년에 50주년을 맞이하는 MAB사업을 기념하고, 앞으로 MAB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더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조도순

MAB한국위원회 위원장



평화를 실현하는 곳, 생물권보전지역

김은영(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청년팀장)

유네스코와 평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물리적 힘과 정부의 타협만으로 이룩할 수 없으며,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그 결과로 1945년 유네스코(UNESCO), 즉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설립하였다. 유네스코는 헌장 전문에 명시된 대로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다짐 속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런 사명을 지닌 유네스코는 평화의 문화 확산과 평화학의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1960년대 동서 냉전의 구도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평화를 모색했다. 평화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평화교육에 특히 힘써 왔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증오가 아닌 이해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함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서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비폭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2000년을 ‘세계 평화의 문화 해’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 유엔 기념해로 지정하였다. 평화의 문화는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비폭력, 대화, 관용, 연대의 문화를 강조한다.

또한 유네스코는 1945년 설립 이후 과학 분야에서 주요한 정부 간 사업으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양, 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각각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정부간수문학사업(IHP),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을 시작하였다. IOC는 해양 관측과 연구 협력을, IHP는 담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물 안보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MAB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다. 정부간 사업은 아니지만 지구과학 공동 비교연구를 위해

국제지구과학사업(IGCP)를 1970년대부터 시작해왔으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과학자들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과학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를 도모해 왔다면, 생물권보전지역은 평화 증진에 어떻게 기여해 왔을까. 생물권보전지역은 그간 보전, 발전, 지원 등 3가지 기능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보면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평화를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등장

유네스코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정부 간 사업인 MAB는 UNEP가 설립되기 전인 1971년 시작되었고, 첫 생물권보전지역은 1976년에 지정되었다. MAB가 시작된 그다음 해인 1972년에 유엔인간환경회가 스웨덴에서 열렸다.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로 다뤄지면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논의가 공론화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인간환경선언>은 인류의 활동으로 야기된 환경오염과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협력을 선포하고 있다. 이 회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평화학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성장의 한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되었고, 환경 안보와 평화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개발로 인해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연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획기적인 제도였다. 자연보전뿐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고려하는 앞서가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의 현실적 한계로 초창기에 지정된 곳들은 대부분을 핵심지역으로 구성하여 보전 위주의 활동이 이뤄졌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 등 3가지 용도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는 보전, 발전, 지원이라는 생물권보전지역의 3가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생물권보전지역은 국립공원 등 국가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심으로, 대부분이 핵심구역으로 구성된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하고 그대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1>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역: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목적을 위한 곳으로 충분한 크기에 장기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핵심구역,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연구와 교육, 관광 등이 이뤄지는 완충구역, 주거지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장려되는 협력구역으로 구성된다.

출처: 유네스코 MAB웹사이트(<http://en.unesco.org/mab>)

1995년에 MAB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세비아전략>을 승인했다. 이 전략은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접근법을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협력구역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전략과 함께 승인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이 규약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후부터 생물권보전지역은 3가지 용도구역을 적절히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이 더욱 강조되고, 현재에도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장소로서 지속가능발전의 학습장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회원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접한 2개국 이상이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산이나 강으로 국경이 생기지만 생태계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공동 관리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같이 신청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한다. 현재 21곳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국가 간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특히 이웃 국가 간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포함하여 여기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가능발전에서 나아가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나아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의미를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의 측면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환경과 평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도 있듯이 평화라고 하면 흔히 전쟁이 연상되곤 한다. 평화는 무력을 포함한 다양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화해를 거쳐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갈등은 민족이나 종교 간 갈등에서 공동체 안의 갈등, 자신 안의 갈등 그리고 자연과 인간 간의 갈등까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평화의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평화, 인간과 인간의 평화, 마음의 평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성,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1989년 유네스코가 코트디부아르의 야무스크로에서 개최한 ‘인간의 마음에 깃든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인간의 마음에 깃들인 평화에 관한 야무스크로 선언>에서는 평화에 관한 새로운 비군사적 위협으로 실업, 마약, 저개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등과 함께 자연자원의 훼손, 기후변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오염 등 인간이 유발한 환경 파괴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인 1992년에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과 평화의 연계가 다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 제시된 27가지 원칙 중 원칙 25는 “평화, 발전, 환경 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1987년 브룬틀란트위원회라고도 하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의 후속으로 1997년 구성된 지구헌장위원회가 2000년 발표한 <지구헌장>에서도 평화를 언급하고 있다. 전문에서는 “자연 존중, 보편적 인권, 경제적 정의, 평화의 문화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개인과 기관, 사업계, 정부, 국제지구 등이 지켜야 할 공동의 원칙으로 4개 분야를 제시하며,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이다. 평화에 관해서는 헌장 16조에서 다루고 있다.

16조. 관용, 비폭력, 평화의 문화를 촉진한다.

(a. ~ e. 생략)

f. 평화란 스스로와,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와, 다른 생명과, 지구 그리고 모두가 구성원으로 있는 더 큰 전체 간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전체성임을 인지한다.

이처럼 평화와 연계하여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지구헌장>에서 제시하는 평화의 여러 측면을 참고하여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를 국가 간, 자연과 인간 간, 마음의 평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이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어떻게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 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해 살펴본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이웃한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시작된 1970년대 후반부터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후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과 서유럽 간에 장벽이 무너지면서 EU의 지원으로 유럽 안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시작되었다. 1992년에 열린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 개념을 승인하면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신청한 타트라 등 5곳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1995년 채택된 <세비야 전략>에서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전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공유하는 생태계를 공동 관리하여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협력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공동관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여 공동 관리와 조율을 위해 협력하면서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지역의 평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현재 갈등이 심하거나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당사자 간 직접적 협력이 어렵겠지만 역사적 갈등이나 아픔이 있었던 곳에서는 인접 지역 간 교류와 만남의 계기를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해 얻게 되면서 이웃한 지역 간 이해를 촉진하면서 화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웃한 국가로서 역사적 갈등이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 국경 지역의 보주뒤노르(Vosges du Nord, 북 보주)-펠처발트(Pfälzerwald, 팔츠 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너도밤나무와 참나무, 소나무로 이뤄진 거대한 혼합림이 있어 공동 관리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지역 방언이나 전통, 공동의 역사 등 유사성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1985년부터 좋은 이웃관계를 맺으려는 외교적 목적에서 협력이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공동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이킹과 교사 교류가 이뤄졌다. 1988년, 1992년 각각 프랑스와 독일의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 비로소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공동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접경지역에 농산물시장을 열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스라소니 보호를 위해 사냥꾼, 숲 관리자, 과학자, 환경교육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공동연구와 모니터링, 교육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두 나라 간의 경제사회 여건의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안의 인구와 도시 규모 차이와 재정 규모 차이, 프랑스와 독일 간 분쟁 역사, 관리기구와 제도

차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양국 간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하였고, 이웃 국가의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고, 비공식 친선모임을 개최하여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그 결과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 후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보면 서유럽의 가장 큰 온대림이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후 간섭 없이 잘 보전되고 있었으며, 접경지역 시장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면서 서로 이해를 높이고 있다면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다뉴브 델타 생물권보전지역도 국경 간 이동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제기금의 지원금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협력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두 나라의 중앙정부의 관심도 높아져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하나의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간 지향하는 목표나 여건 등이 달라 협력이 쉽지는 않다. 국가 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 1992년에 첫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중심으로 21곳이 지정되어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이웃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증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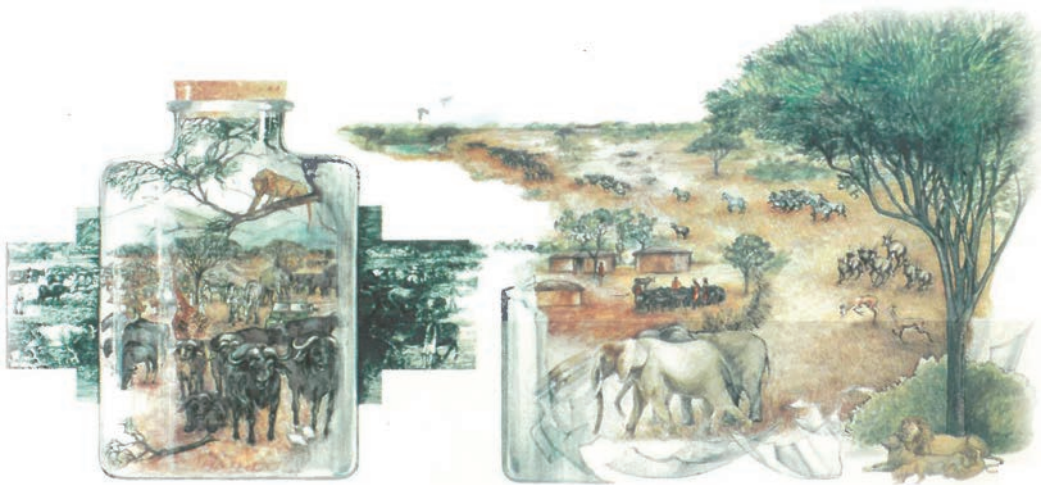
특히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세계시민은 특정 나라나 장소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넘어 지구 공동체의 시민으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교육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은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세계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또한 환경과 사회와 경제적 특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교육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뤄질 때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존하면서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그동안 분리되어 왔던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을 용도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3가지 용도구역, 즉 핵심·완충·협력구역으로 구성된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내법으로 보호 받는 곳인

핵심구역이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넓은 지역을 완충 및 협력구역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농업, 생태관광, 환경교육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구한다. 핵심구역은 전체 면적의 5% 이하이며, 협력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협력구역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법으로 보호를 받는 보호지역인 핵심구역만이 아니라 거주지를 포함한 완충·협력구역까지 전체를 하나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더는 자연이 인간과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런 용도구역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임을 고려할 때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면서 평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평화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자연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보호하기도 하였으나 근대적 의미의 보호지역은 오래된 개념이 아니다. 1872년 지정된 미국의 엘로스톤국립공원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초창기에 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훼손을 막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연지역을 인간 세계와 차단된 닫힌 곳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을 개방하여 주변 지역과 상호 교류하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인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



<그림 2> 인간에게 열린 보전. 과거에 보전은 자연 지역을 바깥의 인간 세계와 차단하는 ‘마개 닫힌 병’과 같은 개념으로 여겨왔다. 이때 안팎의 사회적, 생태적 압력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 보전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개방하여 주변의 더 넓은 지역과 상호 교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이 열린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출처: ‘생물권보전지역: 인간과 자연을 위한 특별한 장소’(2002)

늘날 많은 지역에서는 보호지역 체계와 관리에도 이런 측면이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문화다양성 보전과 전통지식 전승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예로부터 활용되어 왔던 전통지식을 발굴, 계승하고, 생물다양성에서 나오는 언어를 포함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의 조지아만 생물권보전지역은 3만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Ojibway’, ‘Chippewa’, ‘Odawa’, ‘Pottawatomi’ 등 원주민이 살고 있으며, 캐나다 원주민 문화에서 수천 년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 현재 생물권보전지역의 과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의 갯벌에서 이뤄지는 맨손어업,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해녀 활동 등이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문화다양성 연계,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녀의 경우에는 일이 고되고 힘들어 점차 종사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면서 유지, 계승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림 3> 캐나다 조지아만 생물권보전지역 원주민들이 참여하여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활동이 이뤄진다.

출처: 조지아만 생물권보전지역 웹사이트(<http://www.gbbr.ca>)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즉 자연 보전과 나아가 자연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은 국내법으로 보호받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설악산, 한라산 등 국립공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현재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이 아니어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의미가 있는 곳을 핵심지역에 포함하여 신청하면서 그 지역의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간이 훼손할 수 있었던 곳을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982년에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점봉산 일부가 핵심구역에 포함되었다. 이 지역은 나중에 국립공원 경계 조정 때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한라산과 서귀포의 섬 중심으로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제주도가 2019년에 우도와 추자도 등 부속섬까지 포함하며 도 전역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할 때 협력구역만 넓힌 게 아니라 곳자왈 등을 핵심구역에 포함하여 국내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 마음의 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생물다양성이 주는 혜택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식량과 섬유, 땀감과 건축자재 등 의식주의 재료를 얻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의약품의 원료와 성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또한 맑은 공기와 물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 생필품부터 안전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휴양과 여가활동, 유대감, 영감의 원천 등 정신적인 측면에도 측정할 수 없는 기여를 한다. 이처럼 생태계의 비물질적 혜택에는 정신적 풍요, 인지적 발달, 성찰, 여가 활동, 미적 경험 등이 있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심신의 회복과 안정을 도모한다. 생물다양성이 인간에게 주는 이러한 정신적, 영적인 혜택은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평화의 방법을 세워야 할 곳은 인간의 마음’이기에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지닌 다양한 정신적 믿음이나 풍습은 자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떤 장소나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인식이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생겨났다. 지구상의 많은 공동체가 자연과 정신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미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리고 생태계의 일원으로 인간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자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뤄진다. 또한 생태관광도 강조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공존 및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이 이에 기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생명력이 고양되며, 또한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자연의 평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평화를 실현하는 장소 생물권보전지역: 주민 참여와 자긍심

1970년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시작된 유네스코 MAB사업과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장소로서 국가 간, 자연과 인간 간,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기여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평화와 환경, 발전이 상호의존적임을 인지하면서, 생물다양성이 주는 혜택과 함께 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의 전통과 생물다양성과 연계된 문화 다양성을 발굴, 계승, 존중하는 곳이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더욱 힘쓰게 되면서 나아가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누리고 교육과 성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자연과 인간이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자연과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이웃과도 평화를 추구하여, 이러한 평화의 문화가 생물권보전지역 밖으로까지 확산되고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의 학습장’일 뿐 아니라 ‘평화를 실현하는 장소’로서 유네스코의 사명인 세계 평화와 안보 실현에 기여하는 장소이므로.

참고자료

- 김성경 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2019), 우리의 지속가능한 평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백운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1995),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 도서출판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02), 생물권보전지역: 인간과 자연을 위한 특별한 장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10), 생물다양성은 생명,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
- 조도순 외(2011), 유네스코 MAB 40주년 기념: MAB의 성과와 미래, 환경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 존 폴 레더라크, 김동진 역(2012),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후마니타스
- 하영선 편(2002), 21세기 평화학, 풀빛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뉴스레터 제10호(2016. 12. 3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 Juliet Fall, Emmanuel Thirty, Mireille Jardin (2003), Five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s in Europe, UNESCO
- Earth Charter Commission, 2000, The Earth Charter
- UNESCO(2013), UNESCO's Programme of Action: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A vision in Action
- Georgian Bay Biosphere – <https://www.gbbr.ca>
- UNESCO MAB – <http://en.unesco.org/mab>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평화의 섬과 해녀문화

유철인(제주대학교 인류학 교수)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유네스코는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1971년 MAB(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MAB 프로그램은 1974년에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하고 생존과 소득을 가져다주는 생태계와 주민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유네스코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배우는 장소’로 소개하면서, 생물다양성의 관리와 갈등예방을 비롯한 사회체계와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 발전, 지원이라는 세 가지 상호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통적인 보전지역을 넘어서는 구역이 설정된다. 즉, 생물권보전지역에는 보전해야 하는 핵심구역과 혁신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체계 아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구역인 완충구역과 협력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자연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를 중요시 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생태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연구와 모니터링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물다양성은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정부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전문에는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또한 인류 평화의 공헌에 유의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이 평화에 기여한다고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인가. 유네스코는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성별,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평화의 정의는 평화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요한 갈통이 제시한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기초한다. 갈통은 폭력은 없지만 인간집단 간에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도 없는 소극적 평화와 인간집단 간에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적극적 평화를 구별한다.

1999년 <평화의 문화에 대한 선언 및 실행계획>이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는데, <평화의 문화에 대한 선언>의 전문에서도 갈통의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강조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에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선언의 제1조는 평화의 문화를 가치, 태도, 행동의 전통과 유형, 생활양식 등의 총체라고 정의하면서, 평화의 문화가 바탕을 두는 태도와 노력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평화의 문화가 바탕을 두는 태도와 노력

교육,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한 생명 존중, 폭력의 중단과 비폭력의 실천
국가의 주권, 영토의 통합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에 대한 존중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증진
갈등의 평화적 해결
현재와 미래 세대의 발전과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발전에 대한 권리의 존중과 증진
남녀평등에 대한 존중과 증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증진
국가 간이나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자유, 정의, 민주주의, 관용, 연대, 협력,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대화 그리고 이해의 원칙 고수

출처: <평화의 문화에 대한 선언> 제1조

평화의 문화가 바탕을 두는 아홉 가지 태도와 노력 중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발전과 환경에 대한 욕구 충족의 노력을 기울여 평화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평화의 문화에 대한 선언> 제3조에서는 평화의 문화가 발전하는데 <표 2>와 같은 열네 가지 조건과 통합적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그 중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바탕이 되며, 생물권보전지역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표 2> 평화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

갈등의 평화적 해결, 상호존중과 이해 그리고 국제협력의 증진
유엔헌장과 국제법에서 정한 국제적 의무 준수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대화, 중재, 합의 그리고 차이의 평화적 해결 역량 강화
민주적 제도의 강화와 발전과정의 참여 확대
빈곤과 문맹 퇴치 및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여성 차별 금지
아동 권리 증진
정보 접근 확대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인종차별 금지
소수집단을 비롯한 모든 집단에 대한 이해, 관용 그리고 연대의 증진
모든 인간집단의 자결권 존중

출처: <평화의 문화에 대한 선언> 제3조

유엔 결의안의 <평화의 문화에 대한 실행계획>은 <표 3>과 같이 여덟 가지의 실행목록과 각 실행목록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실행목록 중 생물권보전지역이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열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것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발전 전략과 프로젝트의 역량강화이다. 따라서 평화의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는 훌륭한 거버넌스인데, 훌륭한 거버넌스는 합의와 평화가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장치를 말한다.

<표 3> 평화의 문화에 대한 실행목록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실행목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
교육을 통한 평화의 문화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빈곤 퇴치
	국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발전도상국의 외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모든 사람의 발전과정 참여
	발전과정의 성인지 감수성
	여성과 아동을 고려한 발전전략
	갈등 후 재통합
	자연자원의 보존과 회복을 포함하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발전 전략과 프로젝트의 역량강화
	자결권 실현
인권 존중 증진	
양성평등 보장	
민주적 참여 확대	
이해, 관용 그리고 연대 고취	
소통의 참여 및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	

출처: <평화의 문화에 대한 실행계획>

2015년 유네스코 제38차 총회는 <MAB 전략: 2015-2025>를 채택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MAB 전략은 평화와 공평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마련된 유네스코의 중기전략(2014-2021)의 틀 안에서 수립되었다. MAB와 세계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유네스코 중기전략의 전략목표 4(국가, 지역,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과학, 기술과 혁신 체계 그리고 정책 강화)와 전략목표 5(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도전에 대한 과학 분야의 국제협력 증대)에 나타난다.

<MAB 전략: 2015-2025>는 <표 4>와 같이 네 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평화를 위해서는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물권과 조화를 이룬 사회와

경제가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 지식, 사회경제적 실체 이해, 그리고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 4> <MAB 전략: 2015-2025>의 전략목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생태계 서비스를 회복하고 향상시킨다.
생물권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공평한 사회, 경제, 그리고 정주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생물다양성, 지속가능성 과학,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그리고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전 지구적 환경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제주도의 국제보호지역

제주도의 국제보호지역 지정현황은 <표 5>와 같다. 제주도는 자연에 관한 국제보호지역인 람사르습지로 지정(2006년)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2007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보전과 인간의 이용 간에 균형을 꾀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2002년 최초, 2019년 확대)되었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2010년)되었다.

<표 5> 제주도의 국제보호지역 현황

지정연도	국제보호지역	명칭
2002	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2006~2015	람사르습지	물영아리오름 등
2007	세계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10	세계지질공원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명칭의 '제주도'는 'Jeju Island'로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에는 물영아리오름(2006년 지정), 물장오리오름 습지(2008년), 1100고지 습지(2009년), 동백동산(2011년), 숨은물뱅디(2015년) 등 5개의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동백동산 람사르습지가 있는 선흘곶자왈은 생물권보전지역(2019년)의 핵심구역이자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이며, 물장오리오름 습지가 있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세계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이면서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이다.

2007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거문오름, 뽕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성산일출봉 응회구(tuff cone)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속하는 옷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이 추가로 발견되어 2018년 세계유산에 추가되었다.

2002년 지정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영천·효돈천, 그리고 문섬·범섬·섬섬 천연보호구역이 핵심구역이며, 완충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국유림 및 국립공원 북측 일부와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일부이다. 협력구역으로는 개략적으로 고도 200~600m에 해당하는 중산간 지역(도시계획구역 제외), 영천·효돈천 변 양측 500m 구간, 그리고 완충구역 밖의 서귀포해양도립공원과 효돈천 하구 앞 해상으로 구획되었다. 2019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추자도와 우도 등 부속섬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로 확대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변화상과 해양 생물종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우수한 생태계 서비스 지역을 보전하면서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또는 ‘생태관광마을’로 지정받으려는 마을주민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되었다.

2019년 확대 지정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의 핵심구역에 추가로 한경-안덕 꽃자왈과 선흘꽃자왈(동백동산), 그리고 성산일출봉이 육상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꽃자왈은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출되어 울퉁불퉁한 지형을 이루며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은 물론이고 보온·보습 효과가 있어 열대식물의 북쪽 한계지점까지 자라는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식물의 남쪽 한계지점까지 자라는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숲’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양 핵심구역으로 송악산 일대 연산호 천연보호구역, 마라도, 차귀도, 토끼섬, 우도 홍조단괴해빈(홍조단괴는 홍조식물이 핵을 중심으로 자라면서 조류나 파도에 밀려 구르고 뒤집기를 반복해서 생겨난 돌덩이), 추자도, 사수도 등의 천연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이 포함되었다.



<그림 1> 제주도의 꽃자왈

출처: 꽃자왈공유화재단

제주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세계지질공원은 2015년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되었다. 다양한 화산지형과 지질자원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는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이다. 제주도에는 섬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 수성화산체(마그마의 분출 과정에서 외부의 물이 영향을 미치는 수성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체)의 대표적 연구지로 알려진 수월봉, 용암돔으로 대표되는 산방산, 제주도 형성 초기 수성 화산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용머리해안, 주상절리(용암이 식을 때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지면서 5~6각형의 기둥 형태를 띠는 것)의 학습장인 대포동 주상절리대, 100만 년 전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서귀포 패류화석층, 퇴적층의 침식과 계곡·폭포의 형성 과정을 전해주는 천지연폭포, 응회구의 대표적 지형인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가운데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만장굴, 2014년 추가로 대표명소로 지정된 우도, 비양도, 선홍곶자왓, 2018년 추가로 지정된 교래삼다수마을 등 13개의 대표적인 지질명소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

2005년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세계평화의 섬에서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은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를 말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앞서 제주도는 평화실천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격년제로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다가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6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사에서 ‘치유의 평화’, ‘관용의 평화’, ‘에너지 평화’라는 실천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치유의 평화가 제주의 자연에서 우러난다고 하였다. 제주도는 대자연의 치유로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 ‘생태평화’를 만들어 왔으며, 약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순응해 온 제주사람들 자체가 평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용의 평화는 섬이 가지고 있는 개방과 다양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섬의 폐쇄성을 강조해 온 기존의 견해와 매우 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평화롭게 실천되는 에너지 평화의 시범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람이 많고 태양이 작열하는 제주도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탄소 없는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지사의 평화 개념을 실천 가능성을 확보한 평화 개념으로 평가한 고경민의 2017년 논문에서는 평화실천 프로그램으로 ① 인권 증진을 위한 평화실천 프로그램, ② 갈등 관리를 위한 평화실천 프로그램, ③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평화실천 프로그램, ④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평화실천 프로그램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 중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평화실천 프로그램은 갈등 관리와 생태 환경 보호라 하겠다.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개발과 환경 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 생태계와 주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 발전, 지원이라는 세 가지 상호관련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개발과 환경 간의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

고경민은 생태친화적인 평화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유네스코 3관왕’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꽃자왈, 올레길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했다. 유네스코 3관왕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사업을 평화문화의 한 부문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꽃자왈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은 ‘꽃자왈공유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다. 2019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되면서 생태계보전지구 1·2급 지역의 꽃자왈이 핵심구역에 포함된 것은 이러한 시민운동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고경민은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풀뿌리 시민운동이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자연친화적인 제주 올레길 같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도 평화문화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8 인제대학교

<그림 2> 제주꽃자왈도립공원 안내지도

2007년 7월 1일 제주도가 선포한 <제주평화헌장>은 “천혜의 자연을 아끼고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를 이룩한다”를 실천사항의 첫 번째 항목으로 설정했다. 생태계 자체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일정 범위 안에서 타협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평화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천협의회 환경분과위원회’는 이러한 생태평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와 활용을 들었다.

제주해녀문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예방적 처방의 하나로 요한 갈통은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봉사하며 서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간과 자연의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상과 운동의 하나가 에코페미니즘이다. 에코페미니즘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부터 성장해 나온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생태계와 인간을 하나로 보고, 생명의 가치와 평등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 중심, 서구 중심, 이성 중심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황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뒤바꾸려는 실천지침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의 억압과 자연의 위기가 동일한 억압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한편으로는 여성, 유색인종, 하층민을 대하는 방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다루는 방식 간에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개념이다.



© 유철민 (2017)

<그림 3> 물질작업을 나가는 제주해녀

해녀는 인간과 자연의 동반자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해녀는 공기 공급장치 없이 무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으로 제주도에서는 잠녀(潛女)나 잠수(潛嫂)라고도 부른다. 제주도내 102개 마을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해녀는 2019년 12월 말 현재 3,820명이다.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유네스코는 제주해녀문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생계를 위해 산소마스크 없이 10m 아래로 잠수하여 전복과 성게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80대까지 포함된 여성공동체가 있다. 다양한 해양 지식을 지닌 제주해녀는 하루 7시간, 1년에 90일정도 물질을 한다. 한번 잠수할 때 대략 1분간 숨을 참으며, 물 위에 올라와서는 독특한 소리(숨비소리)를 낸다. 이들은 경험에 따라 하군, 중군, 상군의 세 집단으로 나뉘며, 상군은 다른 집단을 이끈다. 바다로 나가기 전 해녀들은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잠수굿을 한다. 관련 지식은 가정, 학교, 어업권을 보유한 지역어업조합(어촌계), 해녀회, 해녀학교, 박물관을 통해 전승된다. 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제주해녀문화는 여성의 지위 신장에 기여하며, 자연친화적인 방법과 채취방식에 대한 공동체의 통제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신청서는 제주해녀문화가 어떻게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활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설명한다. 제주사람 대부분은 제주해녀를 알고 있다. 관련 의례는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한다. 잠수기술과 책임감은 어업조합(해녀회)의 지도자인 선배 해녀에게서 후배 해녀에게 전승되며, 이를 위해 학교도 설립되었다. 마을사업 중에는 공동 물질작업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이는 관련 공동체의 사회통합과 문화적 생명력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어로기술을 금지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방법인 제주해녀의 물질이 유지된다. 또한 제주해녀는 그들의 기술이 인정되고 가계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여권 신장에도 기여한다. 제주해녀문화의 등재는 토착지식에 기초한 무형문화유산의 전 지구적 가시성에 기여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여성의 일에 대한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것이며, 해녀공동체와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공동체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를 공동체 정신이 잘 드러난 문화유산이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해녀가 지닌 기술이 인정되고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 여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으로써 해녀의 지식 즉 토착지식에 기초한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오래전부터 해온 여성의 일도 무형유산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9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확대되면서 해녀들이 생업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가 모두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구역에 포함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전통적인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통합하는 노력을 장려한다. 제주해녀의 전통적인 생태지식과 지속가능한 물질기술은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통합하는 예로 매우 적절하다.

제주해녀문화의 핵심은 공기 공급 장치 없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과 물질 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토착지식)이다. 1997년 당시 남제주군 성산읍 수협 관내에서 서른두 살로 가장 젊은 상군 해녀는 물질을 자기와의 싸움, 머리싸움, 눈치껏 배우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물질은 체력과 정신력, 즉 신체의 자기통제 능력과 물건을 많이 채취하겠다는 욕심 사이를 잘 조절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다. 숨을 참고 깊이 10~15m나 되는 물속에서 1분 이상 작업하는 물질은 물속에서 남은 산소의 양을 감지하고 수면까지의 거리를 가늠하여 잠수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질은 바다를 비롯한 생태환경에 관한 지식과 몸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야하기 때문에 알맞은 기술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머리싸움인 것이다. 무슨 바람이 분다, 어느 쪽으로 물이 흐른다, 어디에서 작업해야 한다 등 물질은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물질은 자기 능력껏 소득을 올리는 것이기에 사냥이나 고기잡이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잘 전수해주지 않는다. 물질작업 전후에 알아서 눈치껏 배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물질경험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해녀는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한 연구자가 현지에서 물질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 물질 ‘선생’이 ‘학생’의 헤엄치기, 입수하기, 채취하기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동작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물질 선생은 입수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쯤 물 위로 솟구치는 것이 적당한지 등 자세한 기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함께 있던 동료 해녀도 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물질을 하러 같이 갈 때마다 선생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파도가 칠 때에는 바위에서 떨어지라고 이야기했고, 해삼을 잘 잡기 위해서는 암초바위와 모래가 만나는 곳을 잘 뒤져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한다.

다른 해녀로부터 얻어듣는 이야기와 자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녀들은 바다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술, 조류와 바람에 따른 기술을 익혀 간다. 물질을 하다 보면 해녀의 몸은 조류에 끌리곤 한다. KBS가 1995년 1월 방영했던 <제주해녀: 숨비소리>라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한 해녀가 수심 20m 되는 곳에서 전복을 빗창으로 떼어 놓고도 숨이 차 물 위로 올라왔다가 몇 번씩이나 다시 내려갔으나, 조류에 몸이 끌려 가늠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그 전복을 못 따고 만 장면이 나온다. 이렇듯 전복, 소라, 성게 따위는 자맥질할 때마다 채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 하는 물질을 헛될 수 있는 물질이란 뜻에서 ‘헛물’ 또는 ‘헛물질’이라 일컫는다.



<그림 4>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

출처: 문화재청

헛물질을 할 때 물건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밭’의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자맥질을 ‘헛숨’이라고 부른다. ‘자맥질 한다’의 제주도 말은 ‘숨빈다’이다. 해녀들은 물에 들면서 몸을 적응시킬 때에도 헛숨이라는 자맥질을 한다. 한 해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수심이 깊은 데를 가려면, 숨고르기를 조정하면서 해야 한다. 귀가 당기면, 숨을 한 번 쉬면 트인다. 억지로 (깊은 데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한다. 물에서 (물로) 나가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귀를 적시며 나간다. 한번에 깊은 데 나가면, 귀가 오므라든다. 수압을 조절하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옷 속에 물을 넣으면 수압이 조절된다. (수압 조절은) 체질에 따라 느낄 수도 빠를 수도 있다.”

한 지역의 바다에서 물질 기술을 익혔다 하더라도 시집을 가거나 이사를 가서 다른 지역 바다에서 물질하려면, 해녀들은 바뀐 바닷속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처럼 물질은 하루 아침에 터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물질 솜씨는 오랜 경험이 키워주는 것이다. 물질작업에서는 폐활량이나 찬물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 같은 신체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운 것이다. 해녀는 체력과 신체의 통제능력을 갖고 닦아야 하고, 바다밭에 관한 지식을 늘려야 하며, 지식과 몸의 움직임이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녀의 민속지식 중에서 바다 지형에 관한 이해는 어장을 발견하고 어로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이다. 해녀는 오랜 물질 경험을 통해 어장 지형을 완전히 숙지하고 압초 같은 지형물의 특성을 터득하여 전복과 같이 중요한 해산물이 있을 만한 곳도 가늠할

수 있다. 해녀는 물속 암초 같은 바다 지형뿐만 아니라 해산물이 있는 장소를 감각적으로 익히고 자신이 작업하는 장소를 인지한다. 작업이 능숙한 해녀는 마을어장의 암초에 따라 생산되는 해산물에 관한 지식을 숙지하게 되며, 이러한 마을어장의 지식과 명칭은 구전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은 ‘어머니가 딸에게조차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경험 지식을 강조한다.

해녀의 물질작업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물질작업을 하는 곳이 달라진다. 마라도 해녀들은 동풍(셋바람)이 불면 그 반대쪽 바다밭인 ‘남대문’에서, 그리고 서풍(셋바람)이 불면 동쪽 바다밭인 ‘성멸’에서 물질작업을 한다. 또한 바람과 조류의 조건까지 고려해서 물질을 해야 한다. 바람이 조류의 방향대로 불어대면 바람 빠르기까지 더해져 조류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그만큼 조류는 더디게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이 조류의 방향대로 불면 먼 바다밭에 나가지 않고 가까운 바다에서,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불면 먼 바다까지 나가서 물질을 한다.

해녀의 작업은 보통 ‘물때’라고 하는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결정된다. 해녀는 물질 할 때 몇 물인지를 생각하고 조류의 세기가 얼마나 빠를지, 얼마 동안 작업이 가능할지, 바닷속 시야가 어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녀는 물때를 이용하여 조수의 방해를 받지 않



<그림 5> 해녀들의 어장청소와 잡초제거 공동작업

출처: 해녀박물관

으면서 목적 장소에 들어 갈 수 있고, 물위로 올라 왔을 때 짙는 테왁과 해산물을 담은 용구인 망사리가 조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떠 있어서 잡은 해산물을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다. 이처럼 조류를 이용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그에 따라 작업 일자와 장소도 결정된다.

제주해녀의 물질작업은 자연친화적인 채집기술로 지속가능성이 있다.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이 채취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줄어든다. 마을어촌계는 해산물의 채취기, 잠수작업 시간,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크기를 규정하고, 물질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통제하여 물질하는 마을어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와 해녀는 물질하는 바닷속을 ‘바다밭’으로 인식하여, 1년에 두세 번 해안과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청소 하고 잡초를 제거한다.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채취하려는 해초나 조개류의 먹이가 되는 해초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생태평화: 공정한 접근과 갈등예방

1999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은 “평화의 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은 어떻게 평화와 연결될 수 있을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운영지침> 제6장은 국가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포용적인 사회발전, 포용적인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평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기여해야 하는 바를 다루고 있다. 유네스코는 <운영지침> 제6장의 해설서로 2015년에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의 브로슈어를 발간했는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이해』(2019년)라는 한글판 해설집에 한 장으로 실었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해설서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예로 소개한 것을 살펴보면, 케냐 키쿠유(Kikuyu) 여성은 농작물의 재배와 종자 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같은 자리에 다양한 종의 콩을 재배하고, 질병과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 대비하여 다량의 종자를 비축한다. 키쿠유 여성이 비축한 종자는 오늘날 식물에 관한 토착지식의 귀중한 보고가 되었고, 수십 년간 이어진 국가 차원의 단일작물 재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빈곤화 이후에 더욱 귀중해졌다. 농부와 유목민, 어부, 전통치유사, 그 밖의 여러 토착지식 보유자가 바로 그러한 생물다양성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자연에 관한 지역의 지식과 실천이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는 제주해녀를 포함한 전통적인 어업 종사자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어업 종사자는 해양생물 다양성을 과제로 다룰 수 있는 전략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그들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수산물의 생태와 행동, 이동, 서식지, 어업과 계절에 따라 적용된 어획 관습 등 세세한 지식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 같은 매우 자세하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지식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갈등과 차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면, 생태평화는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역민의 자연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통제에 달려있다.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툯 채취는 자연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에 해당한다. 툯은 바닷가의 바윗돌 어디에나 자라므로 마을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건조하며, 공동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똑같이 나눈다.

툯 채취는 어촌계에 가입한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남자든 여자든 바다구역별로 동원된다. 툯 판매수입은 공동수입이므로 마을에 따라서는 툯 채취량 중 일정부분을 마을 살림에 쓰고 있다. 툯은 마을바다를 몇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마다 채취 한다. 그러므로 소득의 과다는 자기 구역의 바다에 툯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에 달려 있다. 가파도의 경우에는 바다를 10개 구역으로 나누고 해마다 구역을 바꾸어가며 한 구역씩 맡아 채취한다. 공평하게 자원을 이용하려는 노력이다. 우도 하우목동의 경우에는 모든 동민이 툯 어장 내의 잡초 제거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만일 불참하였을 때에는 벌과금을 내야 하며, 벌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툯 판매수입을 분배하지 않는다.

평화는 적절한 갈등 예방과 해결 체계가 필요하다. 대화와 갈등 해결, 화해에 관한 지역 사회의 관습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을 평화롭게 함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와 환경에 대응하고, 공유 공간과 자연자원 접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습은 비공식적이거나 정교한 편이다.

예를 들면, 스페인 무르시아와 발렌시아의 반건조지대 농부들은 그 지역 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물의 배분과 관개체계 관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재판소를 찾는다. 무르시아 평야의 장로평의회(The Council of Wise Men of the Plain of Murcia)와 발렌시아 평야의 수자원재판소(The Water Tribunal of the Plain of Valencia)는 매주 목요일 소집되며, 이는 다른 민사재판소와 같은 법적 유효성을 지닌다. 재판소의 구성원은 다수의 동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되거나 선택된 농부들이며, 상충하는 주장을 중재하는데 농업과 관개의 토착지식 및 지역 관습을 사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의 지속성은 관련된 사람들이 수용하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해녀문화에도 해녀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습이 있다. 해녀들이 일하는 마을어장의 입어권을 가지고 있는 마을 어촌계 산하에 해녀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해녀회가 있다. 마을마다 조직되어 있는 해녀회는 언제 어떤 물건을 채취할지, 마을의 상(喪)이 나거나 혼례 때 얼마 동안 물질작업을 쉴지 결정한다. 물질작업의 본질은 협동이기에 해녀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해녀회의에서는 해녀 개개인에게 발언권이 있고, 자기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안전에 대해 의견 차이가 나거나 상군·중군·하군 집단 간의 견해가 너무 두드러져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을 때는 상군 집단의 의견이 존중되고, 해녀회장이 내리는 결론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해녀는 물질기술과 생태환경에 관한 민속지식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는 관대하고 자연의 힘 앞에는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 아는 일종의 도덕도 갖추어야 한다. 해녀의 물질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견물생심에 기인한 개인의 욕심과 자만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을 통하여 작업 중의 사고를 줄이고, 나아가 정신적으로 해녀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고, 물질작업 과정에서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동료는 경쟁자이지만 물속에서 닥칠 위험을 상호 예방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주해녀는 동료 해녀에 대한 배려가 깊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물질한다.

제주해녀가 1970년대 중반 고무잠수복을 입게 되면서 전통적인 물웃(무명웃)을 입었던 시절 물질하는 중간 중간에 언 몸을 녹이던 화톳불 자리인 해안의 불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사라지고 현대식 탈의장이 등장했다. 불턱에서 이루어졌던 도덕교육은 잠수굿에서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동김녕리의 잠수굿에서 심방(무당)이 신의 뜻을 해녀들에게 대신 전하는 ‘분부사뵐’의 주요 내용은 물속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조심하라, 물속에서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 그리고 해녀공동체 안에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화합하라는 당부의 말이다. 어촌계장과 해녀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고 지내야만 소원 성취하고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분부사뵐이 신의 뜻을 전한다는 형식을 빌어서 강력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해녀들은 거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인다.

제주해녀는 각자의 개인적인 욕심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해녀공동체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왔다. 자기 숨을 참을 수 있는 만큼 잠수하여 물질하는 해녀의 자연친화적인 채집 방식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보여준다. 제주해녀문화가 만들어 내는 생태평화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떻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 강소전(2005), 제주도 잠수굿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 고경민(2017), 제주의 새로운 평화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제주발전포럼』 63: 3-17.
- 고광민(1996), 해녀기술, 『제주의 해녀』, 제주도.
- 미스, 마리아·반다나 시바(2000),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역, 창작과 비평사.
- 정대연, 유철인, 김영희(1991),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 유인도 학술조사』,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제주도.
- 안미정(2008), 『제주 잠수의 바다발』, 제주대학교 출판부.
- 요한 갈통(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외 옮김, 들녘.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2019),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개정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한국어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9), 『국제보호지역: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 유철인(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 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 97-117.
- 유철인(2006), 제주도 평화문화의 가능성 모색: 제주해녀와 에코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주최 「세계평화의 섬 지정 1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 유철인 외(2016),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 제주 세계평화의섬 실천협의회 환경분과위원회(2009), 제주 평화의 섬 실천 지침(2): 제주 자연계의 평화와 환경보전, 『본질과 현상』 18: 157-185.
- 제주특별자치도(2015),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 제주특별자치도(2018),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신청서.
- 제주특별자치도(2020), 2019년도 해양수산현황.
- 한림화(1987), 『제주바다 잠수의 사계』, 한길사.
- Batisse, Michel (2001), “Biosphere reserves: A personal appraisal,” in ‘Seville + 5’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amplona, 23-27 October 2000: Proceedings/Comptes rendus/Actas, UNESCO.
- Galtung, Johan (1968), “Peace,” in David L. Sh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1,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 UN (1999),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

UNESCO (2013a), *UNESCO's Programme of Action: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A vision in action.*

UNESCO(2013b),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Biosphere Reserves and other Designated Areas: A Resource Book for Educators in South-Eastern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UNESCO (2017), *A New Roadmap for the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 and its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MAB Strategy (2015-2025), Lima Action Plan (2016-2025), Lima Declaration.*

Warren, Karen (1997), "Introduction," in Karen Warren ed.,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main-characteristics> (2020. 9. 11 접근)

<https://en.unesco.org/biosphere/about> (2020. 9. 11 접근)

<https://ich.unesco.org/doc/src/ITH-16-11.COM-Decisions-EN.docx> (2020. 10. 30 접근)

<https://ich.unesco.org/en/RL/culture-of-jeju-haenyeo-women-divers-01068> (2020. 10. 30 접근)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

허학영(국립공원공단 선임연구위원)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자연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가 간의 연합과 연대를 제안하면서, “나는 보전이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였듯이 자연환경 보전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 이슈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 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제15차 총회(1981) 결정문 15/2로 ‘보전과 평화’가 채택된 바 있으며, 리우선언(1992)은 제25원칙으로 ‘평화, 발전, 환경 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IUCN 세계공원총회(2003) 권고문 5.15 “평화, 분쟁과 보호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보호지역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2004)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호지역과 평화를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보전협력 강화를 통한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의장국으로서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를 제안·채택하였으며(2014년 10월), 환경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간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업무 협정을 체결한바(2015년 5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주도로 2016년 IUCN 세계보전총회에서 ‘접경협력과 보호지역’에 대한 발의안을 개발하고 결정문 채택에 기여함으로써 접경지역 보전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

이렇듯 정치·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있는 접경지역에서 환경, 문화 등 비정치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시도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함께 지역의 평화 정착이라는 인류와 지구의 진정한 지속가능성 확보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접경지역 보전협력의 원칙과 지침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 보호와 평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 또는 의결사항’ 등을 먼저 살펴보고, 보전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을 지향하는 접경보호지역의 개념과 사례 고찰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의 협력환경 속에서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과 평화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 보호와 평화에 관한 국제적 권고사항

환경보호와 평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여기에서는 유엔과 IUCN 차원에서 논의·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세계 121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7개 항목의 선언과 26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환경 논의에서 문제해결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톡홀름선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계기(환경 이슈를 국제적 의제로 제시)가 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시발점이 되었다. 인류의 경제산업 활동으로 야기된 환경오염과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공약으로, 그 중 6번째 선언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필수적인 목표이며, 이는 세계 경제사회 발전과 평화라는 기수립된 기본 목표와 함께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공통이익에 따른 국제기구의 행동과 국가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요구됨을 언급하고 있다. 26개 원칙 중 ‘원칙 24’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 감소, 보호, 통제하기 위하여 다국가 간 혹은 양국 간의 협력과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는 스톡홀름선언 외에도 핵무기 실험 금지, 환경 관련 기금 창설,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등에 관한 5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1981년 IUCN 총회에서 채택된 결정문 15/2 ‘보전과 평화’는 “자연 보전의 많은 측면은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인간과 환경의 미래가 전쟁과 그 밖의 적대적 행동으로 위협에 처하게 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보전이 자연자원의 적절하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사용을 통해 평화에 기여하는 것처럼 평화는 자연보전에 기여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단언”하며, “모든 국가는 유엔 및 기타 모든 국가 간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헌신하는 국제 논의를 활발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모든 정부는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군비 축소에 기여하는 기존의 국제 협약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은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유엔 결정문 37/7, 111개국 찬성, 18개국 기권, 1개국 반대)되었으며, 자연 보호와 그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 인정하고 있다. 세계자연헌장에서는 인류가 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에 따라 자연을 변화시키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으므로, 자연의 안정성과 특성을 유지하고 천연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헌장은 5가지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5번째로 “전쟁 또는 기타 적대적인 활동에 따른 자연 파괴로부터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세계자연헌장의 일반 원칙

- ① 자연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본질적인 과정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지구상의 유전적 생존력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야생과 가축의 모든 생명체의 개체군 수준이 적어도 생존을 위해 충분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지가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육지와 바다를 포함하여 지구의 모든 지역은 이러한 보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특별한 보호구역, 모든 종류의 생태계 중 대표적인 표본, 그리고 희귀종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의 서식지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인간이 이용하는 육지와 해양, 대기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계 및 유기체는 최적의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하지만 그들과 공존하는 다른 생태계 또는 종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전쟁 또는 기타 적대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자연 파괴로부터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지구정상회의’로 알려져 있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는 1992년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빈부격차 해소를 목표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리우선언>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은 지구 환경 및 개발체제의 통합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 체결 노력,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7개 ‘리우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 논의(원칙 1), 국제협력 필요성(공통적이나 차등적 책임, 원칙 7)과 더불어 ‘평화, 발전,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원칙 25)과 ‘국가는 그들의 환경 분쟁을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원칙 26)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5개 중요 분야 중 평화와 관련한 ‘평화촉진(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평화 없는 지속가능발전은 불가능하며, 지속가능발전이 없는 평화는 없음’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5개 중요 분야(5P)

- People 사람
- Planet 지구
- Prosperity 번영
- Peace 평화
- Partnership 파트너십

지구헌장(The Earth Charter)(2000)은 서문에서 “우리는 삶과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공동의 운명을 지닌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의 지구 공동체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우리는 자연에 대한 존엄성, 인권, 경제적 정의, 평화의 문화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호, 인권, 균형개발, 평화는 상호의존적이며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윤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헌장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한 상호의존적 원칙으로 4개 분야 16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4개 분야는 ① 생명공동체에 대한 존엄과 보호, ② 생태적 온전성, ③ 사회·경제적 정의, ④ 민주주의·비폭력·평화이다. 평화와 관련하여 원칙 16에서 “평화란 스스로와,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와, 다른 생명과, 지구, 모두가 구성원으로 있는 더 큰 전체와 상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유지, 존속되는 전체성임을 인지한다(Recognize that peace is the wholeness created by right relationships with oneself, other persons, other cultures, other life, Earth, and the larger whole of which all are a part)”라고 제시한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전 지구적인 상호의존과 보편적 책임감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생명에 대한 경의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확고한 결의가 요구되며 정의와 평화, 환희에 찬 생명존중을 위한 싸움의 발걸음을 빨리하는 자각의 순간임을 기억하자”라는 표현으로 헌장을 마친다.

▶ 지구헌장 채택 배경

- 지구 헌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로운 21세기 인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윤리와 규범이 담긴 국제 선언문
- 1987년 환경·개발세계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새로운 규범 설정을 위한 새로운 헌장의 필요성 제기
- 세계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작성되어 2000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지구헌장위원회 설립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해 7월 2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선포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국제적 결의사항을 살펴보면 자연보전을 포함한 환경 보호는 인류 공동의 책임으로 많은 부분에서 국제(양자·다자간)협력을 통해 그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 국의 참여와 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평화, 발전,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평화 없는 지속가능발전은 불가능하며, 지속가능발전이 없는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접경지역 협력과 보호지역 관련 국제적 권고사항

환경보호, 평화, 지속가능발전이 상호의존적이어서 분리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간 접경 지역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평화가 자연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보전을 위한 활발한 협력은 그 지역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경지역의 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 이슈를 다룬 생물다양성협약과 IUCN의 국제적인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지역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생물다양성 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은 제7차 당사국 총회(2004)에서 채택되었는데, ‘생물다양성 보전에서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할 강화와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행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육지, 2012년까지 해양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며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생태적 대표성을 띠는 국가 및 보호지역 시스템을 지정,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4개 프로그램 요소, 9개 주제, 16개 목적, 92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적 활동에 이행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평화구축을 위한 보호지역 측면의 접경협력과 관련하여 목적 1.3을 설정하고 있다.

PoWPA 목적 1.3은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접경보호지역 및 국경을 넘어 인접 보호지역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해양 2012년)까지 접경보호지역의 설립 및 강화, 국가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인접한 보호지역 간의 협력 구축,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향상, 생태계 접근방식 실행, 국제적 협력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목표로 다섯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목적 1.3.1 다른 당사국 및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여 특히 공통의 보전 우선순위로 확인된 지역(예: 산호초군락, 대규모 하천 유역, 산악 시스템, 현존하는 대규모 산림 지역, 멸종위기종의 중요 서식지)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장기 관리를 지원하는 데 적절한 다국가 간 조정 메커니즘 구축

목적 1.3.2 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과학적인 정보에 따라, 국가 관할권의 경계를 넘어 해양 보호지역을 설정, 관리하기 위해 유엔 해양법 비공식협의체(UNICPOLOS)를 통해 다른 당사국 및 관련 파트너와 협력

목적 1.3.3 적절한 경우 인접 당사자·국가와 새로운 접경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기존 접경보호지역의 효과적인 협업 관리를 강화한다.

목적 1.3.4 국경을 넘어 보호지역 간 협력을 촉진한다.

목적 1.3.5 접경보호지역 지정 및 협력적 관리 접근 방식에 대한 지침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고 협의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2014)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하여 채택된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는 생태계 관리와 국가 간 보전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PoWPA 목적 1.3과 아이치 목표 11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워크숍과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지원 활동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평화공원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혜택, 특히 보전이 어떻게 분쟁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평화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접경지역 보전 권역 정보를 갱신하고, 기존 평화공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평화공원 지정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평화공원조성 계획 및 구현을 위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와 더불어 모범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

접경보호지역의 주요 목표는 일반적으로 ① 생물다양성 보전 ② 사회·경제적 발전 ③ 평화와 협력 문화의 증진이다. 평화공원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 경계를 넘어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자연·문화적 가치의 장기적 보전 협력 지원
- 토지이용 통합 계획 및 관리를 통한 경관 수준 생태계 관리 추진
- 국가와 지역사회, 기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구축, 이해, 화해와 협력
- 자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포함한 긴장 예방과 해소
- 무력 충돌에 따른 화해·해결 촉진
- 공동 연구 및 정보 관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과 문화자원 관리 기술·경험 공유

생물다양성협약은 현재 특정 교차이슈 중 하나로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에서 접경협력을 촉진하며,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접경협력에 관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많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 개발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접경지역 협력과 보호지역’과 관련한 세계공원총회 권고문을 살펴보면 ‘평화, 분쟁과 보호지역(IUCN WPC Rec.5.15, 2003)’은 평화, 갈등과 보호지역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부·비정부·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① 보호지역과 분쟁지역 간의 상호관계 인식 ② 보호지역 내의 분쟁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문가 양성 ③ 보호지역의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 지원 ④ 당사국의 책임 강화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간 보전 이니셔티브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UCN WPC Rec.5.11, 2003)’은 접경지역 계획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권고사항은 ① 접경지역 보전 관련 포럼 설립 지원 ② 보전

이니셔티브를 위한 도구와 메커니즘 개발 ③ 보호 모니터링과 협력 평가 프로그램 개발 ④ 국제적 인증 보호지역 지정 확대 등이다. 참고로 IUCN 세계공원총회는 10년마다 열리는 보호지역과 관련한 대표적인 글로벌 포럼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 기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보호지역을 포함한 자연보전 관련 향후 10년간의 세계적 의제를 설정(1962년 이후 지금까지 6회 개최)하고 있다.

<표 1>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접경지역 보전협력 관련 결정문

연도	결정문 제목	내용
1998	COP 4.4 내륙 수자원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상태와 추세 그리고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분수령, 저수지 유역과 이동성 동물의 지속적인 관리의 효과적 협력을 개발, 유지 • 접경지역의 육수생태계는 관련된 지역적, 국제적 기관 등을 통해 평가되어야 함
1998	COP 4.15 CBD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다른 국제협약, 기구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 권장
2000	COP 5.6 생태계 접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와 관련하여 접경지역의 협력이나 국제적 협력 같은 수준에서 행동 요구
2004	COP 7.16 조항 8(J)와 관련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의 생물학적, 유전자자원과 전통관련 지식의 분포를 인식
2004	COP 7.28 PoWPA 목적 1.3 지역 네트워크, 접경보전지역 설립 및 강화, 접경보호지역 간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가이드라인 및 정보 구축
2006	COP 8.1 섬의 생물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협약의 법률에 근거한 적절한 장소에 접경해양 보호지역 지정 장려
2006	COP 8.2 건조지역과 반 습지 지역의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및 지역사회 기반의 자연자원 관리
2014	COP 12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생태계 관리와 국가 간 보전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적 평화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방안과 수단 논의, 한국의 지원활동 강화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2016) 29쪽 내용 보완·정리

<표 2> 세계공원총회의 접경지역 보전협력 관련 권고문

연도	제목	내용
2003년	권고문 11 국가 간 보전 이니셔티브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접경지역계획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협력 필요성 강조
2003년	권고문 15 평화, 분쟁 그리고 보호지역	평화, 갈등과 보호지역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부·비정부·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권장
2014년	주제별 권고사항: 보전 목적 성취	정부는 초국경적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단절된 경관의 연계 또는 경관 연결성 증진을 위한 연결성 계획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2014년	주제별 권고사항: 기후변화 대응	육상 및 바다 경관이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적응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관을 보호 연결하기 위하여 국가 내에서 또는 국경을 초월하여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
2014년	주제별 권고사항: 해양보전	공해상(해저 포함) 생물다양성 보호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2016) 31쪽 내용 재정리

우리나라에서 발의하여 전 세계 총 2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채택된 2016 IUCN 세계보전총회 <Res. 35 접경협력과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 많은 부분이 국경에 인접해있으며 최근 접경지역 이니셔티브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국경과 국경을 사이에 둔 접경지역 협력이 자연 보전, 생태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평화 증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접경지역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지역사회, 원주민, 보호지역 관리자, 보전 관계자, 시민사회, 과학자)는 그 지역의 평화 정착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 기존 및 신규 접경지역의 소통을 지원하고, 접경보호지역에 대한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 지침서(2015)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 보전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글로벌 인벤토리 구축, 글로벌 플랫폼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IUCN 내 모든 학술위원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접경협력 지원, 접경지역 내 법적 자원센터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다.

접경보호지역 개념

2015년 발간된 IUCN의 ‘접경지역 보전에 관한 지침(2015)’에 따르면 접경보호지역을 “하나 이상의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생태적으로 연결된 보호지역으로 일정 형태의 협력을 수반한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한정된 공간”으로 정의 하고 있다.

IUCN WCPA의 접경지역 보전 전문가 그룹은 접경보전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고 있다.

IUCN의 접경보전지역 유형 구분

비고	유형
유형 1	접경보호지역 (Transboundary Protected Area)
유형 2	접경 보전 경관과 해양경관 (Transboundary Conservation Landscape and/or Seascape)
유형 3	접경 이동성 생물 보전지역 (Transboundary Migration Conservation Area)
3개 유형 모두에 특별히 지정할 수 있는 유형	평화를 위한 공원 (Park for peace)

자료: IUCN, 2015, Transboundary Conservation A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p.8.

첫 번째 유형인 ‘접경보호지역’은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한정된 공간으로, 하나 이상의 국경을 넘어 생태적으로 연결되는 보호지역 유형이며 협력 활동을 수반한다. 두 번째 유형인 ‘접경 보전 경관 및 해양 경관’은 하나 이상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생태학적으로 연결된 지역으로, 보호지역과 다양한 자원 이용 지역을 모두 포함하며 협력 활동을 수반한다. 접경 보전 경관(해양경관)은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보전 목표를 지원하는 다른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다중 이용 지역은 보호지역의 목적에 부합하며 접경보호지역이 하나의 경관 및 해양 경관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유형인 접경 이동성 생물 보전지역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있는 야생생물 서식지로서 이동성 생물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곳으로, 협력활동을 수반한다. 이 개념은 기존의 접경 이동 통로와는 차이가 있는데, 수정된 명칭이 지리학적·공간적 지역을 더 잘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접경보호지역 유형별 특성 비교

특징	접경보호지역	접경 보호 경관 (해양 경관)	접경 이동성 생물 보전 지역
국경을 넘는 협력	예	예	예
보호지역 포함	예	예	반드시 그렇지 않음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지역을 포함.	아니요	예	반드시 그렇지 않음
공유 생태계	예	예	반드시 그렇지 않음
접경보전지역 내 단위 공간 사이의 물리적 인접성	예	예	반드시 그렇지 않음
종·서식지 관리에서 국가 간 협력	예	예	반드시 그렇지 않음
이동성 생물의 보호가 협력의 주된 원인	반드시 그렇지 않음	반드시 그렇지 않음	예
운영관리에서 국가 간 협력, 지역사회의 관계 강화, 방문자 관리, 보안사항 고려	예	예	반드시 그렇지 않음

자료: IUCN, 2015, Transboundary Conservation A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p.14.

‘평화를 위한 공원’은 세 가지 유형의 접경보호지역 모두에 특별히 지정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접경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 축하,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다. 기존에 사용된 용어인 평화공원은 종종 접경지역과 관계없는 상황에 쓰이기도 하여, IUCN은 1997년부터 접경보호지역의 한 유형으로 ‘평화를 위한 공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IUCN, 2015). 평화를 위한 공원의 목적은 지속적인 평화를 축하하고 기념하거나 평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또한 미래의 평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접경보호지역 사례

콘도르산맥 접경보호지역(Cordillera del Condor Transboundary Protected Area)

페루와 에콰도르 접경지역으로 총 1만 6,505.5km²로 에콰도르의 엘콘도르(El Condor)공원 25.4km², 페루의 생태보호구역 54.4km², 페루의 산티아고-코마이냐 (Santiago-Comaina)

보전지 1만 6,425.7km²로 구성되어 있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국경 분쟁이 있었으며 1828년 이후 1998년까지 34차례에 걸쳐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1942년 에콰도르와 페루는 휴전에 합의하였는데, 1960년 에콰도르 대통령이 지리적 모순과 협상 과정의 억압을 이유로 합의 전체의 무효화를 선언하였고, 그 후 1995년 1월 에콰도르와 페루의 세네파 전쟁이 발발하기에 이른다. 이 전쟁의 종결을 위해 두 국가는 리우 협약 보장국이 참여하여 외교 협상을 시작(1995년 2월)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양 국가의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협상을 거쳐 1997년 국경 통합, 안보 협정, 토지구경선 획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브라질리아 선언’(Acta Presidential de Brasilia)에 합의하였다.

<표 4> 1998년 브라질리아 선언 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지역 모두를 환경보호지역으로 만든다. 양국은 각 국경지역에 국립공원을 조성한다. 두 국립공원은 같은 이름을 공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원주민 공동체는 양 국경 공원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콰도르는 1995년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 있는 페루 영토 1km²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콰도르 국민은 에콰도르 영토로 연결되는 5m 폭의 공도를 통한 자유 통행 권리를 부여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 및 항행 협정에 따라, 페루는 에콰도르에 아마존 강에 대한 자유롭고 지속적이며 영원한 접근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추후 교역과 항해를 위해 물류와 재수출품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설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을 따라 태평양에 이르는 자루밀라(Zarumilla) 운하 급수와 관련된 외교 문서를 교환한다.

출처: The Carter Center 2010; 이상현 외(2015)에서 재인용

1993년부터 1994년까지 국제보전협회(CI, Conservation International)는 정부기관과 지역 과학자와 함께 콘도르산맥의 생태적 다양성과 서식지 연구를 수행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제보전협회와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의 노력으로 1999년 에콰도르 정부는 25.4km²의 콘도르 국립공원을 지정하였으며, 페루는 국경지역에 걸쳐 54.4km²의 생태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산티아고-코마이냐 보전지를 지정하였다. CI와 ITTO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에콰도르와 페루의 콘도르 산맥 평화와 보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ITTO의 재정적 지원과 정부기관, 원주민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 NGO와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에콰도르와 페루의 기술 협력, 국경 보호지역 설립과 보호지역 관리계획의

통합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4년 콘도르-쿠투쿠 보전지역 평화공원(Condor-Kutuku Conservation Corridor Peace Park)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는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는 보전협력을 통한 포괄적 갈등 해결의 실험적 사례로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공원 전략의 인식과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동부 카르파티아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East Carpathians Biosphere Reserve)

동부 카르파티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초의 3개국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역이다. 1947년 중반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작전 지역이었으나 이후 전체가 자연 식생과 동물의 서식지로 변모하였다. 전체 면적의 27.5%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범위가 210~1,346m의 산악지대로 조림이 잘되어 있다. 카르파티아산맥의 천연 자작나무와 전나무 숲을 포함한 세계유산 지역의 원생 자작나무 숲으로서 2006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경관 면으로는 고산식생대보다 아고산대 초원이 나타나며, 대형 동물의 자연서식지로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은신처 중 하나이다. 이곳은 불곰, 늑대, 스라소니, 산고양이 등 대형 토착종 포식자와 붉은사슴, 재유입된 유럽들소, 비버 등 대형 토착종 초식동물이 존속 가능한 규모의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1991년 5월 폴란드의 비슈츠사디 국립공원, 슬로바키아의 비초드네카르파티 보호경관 지역,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틀레스 산림관리청 등 3국의 서로 인접한 보호지역 관리 당국은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였고, 이는 1991년 9월 3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서명한 동부 카르파티아 지대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3국 간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1992년 11월에는 유네스코가 폴란드-슬로바키아가 신청한 ‘동부 카르파티아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였고, 1993년 우크라이나의 스투지차 경관보전지역을 별도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998년 12월 유네스코는 세계 최초로 3국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동부 카르파티아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기에 이른다.

동부카르파티아 생물다양성 보전재단은 1995년 스위스에 등록되었고, 1996년에는 NGO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첫 소액지원 사업을 개시하였다. 세계 최초 3개국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국제원조단체의 관심을 받았으며 2001년 재단은 폴란드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고, 2004년 접경지역 협력지원계획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2006년 폴란드의 정치적 격변은 공원의 인력 교체와 국제협력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져 같은 해 재단은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게 되었다.

2007년 이후 동부 카르파티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협력은 폴란드에서 매년 열리는 과학 회의에 국한되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접경지역 협력 발전은 3국 모두의 보호지역 관리자와 과학자 간에 우호적이고 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워터튼-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Waterton-Glacier International Peace Park)

1932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있는 캐나다 워터튼국립공원과 미국 글레이셔 국립공원이 세계 최초의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양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양국의 로터리클럽 회원들과 국립공원 관리자들이 두 공원의 생태적, 지리적 동질성과 지역 원주민간 이주 및 갈등 치유 목적으로, 야생동물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공원 지정을 발의하였다. 양국 의회가 이 두 공원의 통합을 결의하면서, 세계 최초의 ‘워터튼-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이 사례는 국경을 초월한 생태적, 인문적 통합과 지역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평화 아이콘’으로 인식되었으며, 접경보호지역의 협력 및 평화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IUCN의 접경보호지역

IUCN의 접경보호지역의 글로벌 인벤토리 구축은 UNEP의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에서 수행하며 2007년 기준으로 227개의 접경보호지역 집합체가 지정되었으며 지정, 관리는 IUCN의 접경지역 보전 전문가 그룹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일례로 북한의 백두산, 중국의 창바이산(長白山)과 징푸호(鏡泊湖), 러시아의 케드르바야 파드가 포함된 총 6,043.97km² 지역이 하나의 접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전협력을 통한 평화정착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평화, 발전,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보전협력은 지역의 평화 정착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또는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있는 접경지역에서 환경, 문화 등 비정치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시도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남북 간에도 여러 차례의 공동선언을 통해 다양한 환경 관련 협력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대표적인 합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12. 13.)의 ‘남북교류협력(3장)’ 부속합의서(1992. 9. 17.) 제2조에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교류협력 실현을 언급하고 있다.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7.12.21.) 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은 보건의료·환경보호·산림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사업,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확대, 환경보호센터와 한반도 생물지 사업, 산림녹화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산림병해충 조사·구제)한 바 있다.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문(2018. 9. 19.)을 통해 남과 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존 합의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협력환경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 생태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생태외교의 한 형태로서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전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환경부·국립공원공단(2018)의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연환경 분야 15건의 잠재 남북 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로 ①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 ② 임농복합경영지원·협력 ③ 국제적 중요 이동성 조류(저어새, 두루미 등) 공동 보전 사업 ④ 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 ⑤ 한반도 대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통합정보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적합한 파트너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건강한 생태공동체 구현과 더불어 평화 정착이라는 한민족의 소망이 실현되는 미래가 한(漸)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자료

IUCN(2015), Transboundary Conservation A systematic and integrated approach

Martin Holdgate(1999), The Green Web: A Union for World Conservati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UK. 328pp.

국립공원관리공단(2016), DMZ의 효과적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2016 WCC 발의안 개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2017), DMZ 관련 2016 WCC 발의안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허학영·심숙경(2020),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 증진 방안 연구; 사례분석 및 전문가 인식조사에 근거한 잠재 협력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4(5): 483-490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2018),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방안 연구

<https://www.cbd.int/peace/>

국경을 초월한 생태평화 협력의 장,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심숙경(국립생태원 전시교육본부장, 유네스코 국제생물보전지역자문위원회 위원)

전 세계를 피폐하게 만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네스코를 설립하였다. 기구의 설립목적처럼 유네스코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에는 평화 가치가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다. 환경문제가 인류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던 무렵인 1971년, 유네스코는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자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을 설립하였다. 이어서 1974년 MAB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실현하기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체제가 만들어졌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714개 생물권보전지역이 세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권(자연)과 인간이 대립·상충 관계가 아닌 조화·평화 관계로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델 지역이 되고자 하는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 내재된 이러한 자연-인간 간의 평화 가치는 국경을 초월하여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접 국가가 공동으로 지정·관리하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과 각 지역·소지역에 구성된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가 생태평화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국경을 초월한 생태평화 협력의 장’으로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바라보고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이 생태계보전과 평화증진 측면에서 갖는 이점, 지정 현황,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대상으로 한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사례도 살펴보려 한다. 2000년대 초부터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과 관련해 일어났던 일과 이후 추진전략의 변화를 돌아보면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DMZ 일원의 보전과 남북한 평화정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란

국경을 초월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평화 협력

일반적으로 평화란 사회적 평화(social peace)를 뜻한다. 생태평화는 생태계 보전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꽤 익숙한 용어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비무장지대(DMZ) 보전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곤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남북협력 사업으로 DMZ 안에 설치하고자 했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명칭에도 '생태평화'란 용어가 들어갔다. 영어로는 'eco-peace' 또는 'ecological peace'라고도 한다. 생태계보전 분야에서 말하는 생태평화는 사람들 간의 평화, 즉 사회적 평화와 생태계 보전이 함께 실현되는 것을 뜻하거나, 보다 적극적 의미로 생태계보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구축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생태계보전은 인간-자연생태계 간의 평화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생태평화는 인간사회 내의 평화 그리고 인간-자연 간의 평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과 지역·소지역 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한 생태평화 협력의 유용한 장이다. 일반적으로 국경지대는 국가 간의 민감한 이해관계로 갈등·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국경으로 나뉜 생태계를 인접 국가들이 함께 공동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생태평화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잘 보여준다. 또 지역·소지역 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는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발굴하여 지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포괄적인 생태평화 협력의 기반을 제공한다.

세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 람사르습지 같은 여타 국제보호지역에 비해 지역·소지역 네트워크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지역별·주제별 하부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 교류하고 협력한다. 그래서 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들은 당사국 내 뿐만 아니라, 지역·소지역 또는 생태계 유형(연안·해양, 열대림, 산악 등)에 따른 주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정보·경험 공유, 교육·훈련, 연구 등의 교류·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지역 네트워크로는 AfriMAB(아프리카), IberoMAB(남미, 카리브해 지역, 포르투갈, 스페인), EuroMAB(유럽, 북미), ArabMAB(아랍)이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아태지역에는 아래와 같이 4개 소지역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 동북아시아: EABRN (East Asian Biosphere Reserves Network)
- 동남아시아: SeaBRnet (Southeast Asian Biosphere Reserves Network)

- 남·중앙아시아: SACAM (South and Central Asia MAB Network)
- 태평양: PacMAB (Pacific Man and the Biosphere Network)

아태지역의 첫 소지역 네트워크인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는 한국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지난 25년간 운영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EABRN은 유네스코와 MAB 프로그램 내에서 한국의 기여도와 위상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ABRN은 1994년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첫 번째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공동비교연구(Cooperative Scientific Study of East Asian Biosphere Reserves)를 시발점으로 1995년 5월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개최된 제3차 공동비교연구에서 공식 설립되었다. 네트워크 설립 당시의 5개 회원국 외에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합류하여 현재 회원국이 7개국이다. 네트워크회의 정기개최, 훈련과정 운영, 공동 연구·출판 같은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다.

아태지역 내 다른 소지역에 비해 제도화된 지역협력체제가 거의 없는 동북아지역에서 EABRN은 오랜 기간 이 지역의 생태평화 협력에 기여해 왔다. 특히 남북한의 전문가·정부관계자가 EABRN 회의에서 만나 교류하고, 유네스코를 통해 북한의 생태 관련 책자 발간(자연보호지역, 멸종위기종, 금강산·구월산·묘향산 등)과 북한의 자연자원 5개년 연구사업(2014~2015년 시행 후 중단)을 지원하는 등 남북 생태협력의 창구 역할 톡톡히 해 왔다. 동북아국가 간 다자협력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통로가 되어준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는 EABRN을 통한 남북한 생태협력도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이점과 지정과정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국경을 넘어선 사회·생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사업이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관리는 한 국가 내 생물권보전지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절차 그리고 지정 후 10년마다 관리현황을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정기검토’는 2000년 10월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열린 ‘세비아+5 국제전문가회의’의 권고문을 따르고 있다. 이 권고문은 보통 <팜플로나권고문>이라 부른다.

‘세비아+5 국제전문가회의’가 개최된 2000년경부터 유네스코는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관리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국경을 사이에 둔 공유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생태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당 정부 간의 합의에 기초한다. 공유 생태계의 토지이용, 공동사업 개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경험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 정책이 수립된다. 특히,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국경을

사이에 둔 양국의 보호지역과 정부당국들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이점

한 국가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관리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경우 이웃국가 간 협력이라는 도전적인 임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 또한 많다.

◦ 인위적 국경으로 나뉜 생태계의 통합관리

연속된 생태계가 인위적 국경에 따라 나뉘어 서로 다른 법제도와 방식의 적용을 받다보니 일관되고 포괄적인 보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생물종의 보전방안 조율, 해충이나 산불, 갑작스러운 홍수 같은 대규모 피해에 효과적 대응 등 생태계 보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 생태평화를 위한 장기 협력체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자국과 이웃국가의 관리자, 행정당국,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강화에 기여한다. 그 결과 국가적 공동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웃국가의 정부당국과 협력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협력사업과 달리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운영되면서 진정한 협력과 공동제도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다른 형태의 접경보호지역에 비해 특별한 점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된다는 것이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정부 간 합의뿐만 아니라 일종의 ‘중립적 범무관’ 같은 역할을 하는 유네스코 간에 이뤄진 합의이기도 하다. 만약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미디어나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원조기관, 비정부기구(NGO), 미디어 등 국제사회에 알려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유네스코 지정은 이와 같은 추가 보장 장치를 제공하며, 이러한 보장 장치는 해당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된다.

◦ 평화의 문화 형성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평화, 관용, 희망의 메시지를 해당 국가의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대외적으로도 확산할 수 있게 한다. 언어·문화가 같은 국가들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서 접촉과 교류가 늘어나게 되면 국경으로 분단되어 온 접경지역 사회에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의 경우라면 국경지대의 긴장 완화, 이동의 자유 촉진,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주변부의 불리함 극복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해당 국가 내에서 보통 주변부에 위치하여 국가 수도 같은 중심지

에 비해 소외되고 불리한 경우가 많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국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접경지역은 세계무대에 올라서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인지도와 자긍심이 크게 올라간다. 관광 등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아져 열악한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국제원조기관의 재정지원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과정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 번째 방식은 개별 국가에서 먼저 각각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한 후에 이들을 통합하여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번에 관련 국가에서 공동으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통합적 기능의 실현이 가능한 하나의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많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첫 번째 과정을 거쳐 지정되었고 유네스코도 첫 번째 방식을 권장한다. 별도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양식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류에는 없는 해당 정부당국 간의 공식 합의문과 공동 실행계획도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추가 신청서류들을 포함하여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도구역을 설정한다.
- 지역 및 국가 파트너를 선정하고 공동 실무조정 그룹을 설립한다.
- 명확한 임무를 지닌 공동 관리체계를 만든다.
- 모든 관련 국가의 정부기관이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공식 합의문에 서명한다.
- 각 국의 해당 지역을 각각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할 것인지, 공동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 결정한다.
- 향후 협력계획에 들어갈 핵심사항들을 제시한다.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에 따라 일반적인 실행과제들이 제시되기는 하나 지역마다 현실 상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융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팜플로 나권 고문>에서는 각 지역과 국가의 협력파트너로 접경협력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무그룹은 향후 양자 위원회 또는 공동 운영위원회 등으로 불리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공동 조정기구로 발전될 수 있다. 공동 조정기구 외에 대부분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자국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별 거버넌스 체계가 있다.

세계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29개국의 714개 생물권보전지역 중에 21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31개국에 걸쳐 있다. 대부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는 유일하게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Great Altay가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만 연결하지 않는다. 모로코와 스페인의 ‘지중해 대륙 간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럽과 아랍·아프리카 두 대륙을 연결한다.

2000년대 초 동북아 지역에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EABRN 내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중국-러시아 삼국 접경의 두만강 하구를 비롯하여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각 국경에 위치한 우수 생태계를 대상으로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잠정 후보지가 제안되었다. 남북한 DMZ도 잠정 후보지에 포함되었는데,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표 1>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지정년도	국가	생물권보전지역
1992	체코/폴란드	Krkokonose / Karkonosze
1992	폴란드/슬로바키아	Tatra
1998	프랑스/독일	Vosges du Nord / Pfälzerwald
1998	폴란드/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East Carpathians
1998	루마니아/우크라이나	Danube Delta
2005	모리타니/세네갈	Delta du Fleuve Sénégal
2006	모로코/스페인	Intercontinental Biosphere Reserve of the Mediterranean
2009	포르투갈/스페인	Geres - Xures
2011	엘살바도르/과테말라 /온두라스	Trifinio Fraternidad
2012	벨라루스/폴란드/우크라이나	West Polesie
2012	크로아티아/헝가리	Mura Drava Danube
2014	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	Ohrid-Prespa
2014	프랑스/이탈리아	Mont Viso / Area della Biosfera del Monviso

2015	포르투갈/스페인	Meseta Ibérica
2016	포르투갈/스페인	Tejo/Tajo Internacional
2017	카자흐스탄/러시아	Great Altay
2017	베냉/토고	Mono
2017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La Selle - Jaragua-Bahoruco-Enriquillo
2017	에콰도르/페루	Bosques de Paz
2019	폴란드/우크라이나	Roztocze
2020	베닌/부르키나파소/니제르	Complex W-Arly-Pendjari WAP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가능성

세계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태평화 협력의 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생태보전 협력을 통해 상대 지역에 대한 불신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1개 접경생물권보전지역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생태환경에 따른 다양한 사례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

■ 프랑스-독일의 보주뒤노르(Vosges du Nord, 북 보주)/펠처발트(Pfälzerwald, 팔츠 숲) 접경생물권보전지역

프랑스의 보주뒤노르(Vosges du Nord) 지역자연공원이 1988년 독일의 펠처발트(Pfälzerwald) 자연공원이 1992년 각각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뒤이어 1998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통합 지정되었다. 두 자연공원은 사암이 발달한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형학적 지대에 속한다. 이곳은 과거 독일과 프랑스 간의 영토분쟁이 치열했던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 지역이었고, 제1, 2차 세계대전의 격전장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양국의 접경지역은 지방 방언, 건축, 전통 등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교류가 별로 없던 곳이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면서 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양국 자연공원의 과학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 과학위원회도 구성되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합의문에는 여러 접경 협력·발전 분야가 제시되어 있는데, 생물다양성 보전, 건전한 임업, 농업생태학, 양질의 관광, 지속가능발전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지속가능 에너지 지원, 기후변화, 문화유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MAB 네트워크 참여 등이다.

다양한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주말 국경농민시장이 한 예이다. 양국의 지역주민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과 창의적인 공예품들을 국경 근처 시장에서 함께 판매하였고, 많은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또 이 일대의 중요 보호종인 스라소니를 보호하기 위해 수렵인, 산림관리원, 과학자, 환경교육자, 정부기관 대표, 자연환경단체들이 접경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림 1> 프랑스-독일 Vosges du Nord-Pfaelzerwald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사진: Good Practices in French Biosphere Reserves, 2017

■ 에콰도르-페루의 보스께데파즈(Bosques de Pa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에콰도르 남서쪽의 보스께세코(Bosque Seco) 생물권보전지역과 페루 북서쪽의 노레스테아모타페스-망글라레스(Noroeste Amotapes-Manglares) 생물권보전지역이 2017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하나가 되었다. 최정상이 3,000여m인 안데스 산맥 서부 기

숲에 자리 잡고 있다. 남미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19세기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설정된 불분명한 국경선 때문에 대립과 전쟁을 반복했다. 아마존 강으로 이어지는 핵심 통로를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1995년 치열한 전투 끝에 맺어진 평화협정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998년 통상·항로 협정, 분쟁방지를 위한 안보협정, 국경선 구획완료 등의 타결과 함께 실질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뒤이어 1999년에는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국제기관의 도움을 받아 에콰도르가 엘콘도르 국립공원을, 페루가 생태보호지구와 산티아고-코마이 나 보전지역을 지정한 뒤 이들을 콘도르 산맥지역(Cordillera del Cóndor) 접경평화공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17년 보스께데파즈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는 1998년 평화협정 이후 20여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유대, 신뢰, 협력을 강화해 온 양국의 노력이 결실로 이룬 성과이다.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과거 분쟁지대였던 접경지역의 평화를 국제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이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름도 이런 취지에 맞게 ‘평화(Paz)의 숲(Bosques)’ 이다.



<그림 2> 에콰도르-페루의 평화의 숲 접경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

■ 모로코-스페인의 지중해 대륙 간 생물권보전지역(Intercontinental Biosphere Reserve of the Mediterranean)

2006년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과 모로코의 육지·연안·바다로 이루어진 대륙 간 생물권보전지역이 세계 최초로 지정되었다. 총 면적은 9,072km²이다. 생태계가 매우 풍부하며 특히 117여 종 철새들의 서식지이다.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양국 간 상호교류의 결과로 고유한 안달루시아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모로코, 스페인 양측의 보전방식을 통합하고 다양한 전통 생활양식과 예술표현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제도화하며 문화적 유사성들을 재발견하고 있다. 특히 물(담수)은 양 지역 간의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물은 문화와 사회·경제적 요소를 연결해주며 생물권보전지역 전체에 공통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물은 사막화와 싸고 있는 사하라사막과 이베리아반도의 수원이기도 하다.



<그림 3> 대륙을 잇는 모로코-스페인 지중해 대륙 간 생물권보전지역의 위치

사진: 유네스코 누리집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transboundary-biosphere-reserves/spain-morocco/intercontinental-br-of-the-mediterranean/>

비무장지대(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 사례

우리나라에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필요한 곳이 있다. 바로 비무장지대(DMZ) 일원이다.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구상은 유네스코 MAB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관과 전문가의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만들어진 DMZ의 설치목적은 군사적 대치를 완충하고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하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생태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전쟁으로 무참히 파괴되었던 자연이 수십 년간 인간 출입이 금지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회복되어 온 생태적 과정 그리고 그 안의 수많은 희귀 동식물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자연평화공원 등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생태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보호지역을 설정하여 DMZ를 보전하자는 제안이 여러 번 논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실현하기 어려운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유네스코 지정지역인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용한 DMZ 보전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도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노력이 수년간 이뤄졌고, 이는 일련의 후속과정을 거쳐 ‘접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물권보전지역 두 곳이 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남북한 공동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

2000년대 초반은 남북정상회담(2000년) 성사 등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때였다. 금강산 관광, 경의선·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등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남북한 경의선·동해선 연결 공사와 관련하여 제한적이거나 DMZ 내 환경조사도 이루어졌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활기를 띠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초 환경인 신년인사에서 DMZ를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정부의 정책과제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01년 4월 MAB한국위원회 위원장(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명의로 조선마브민족위원회(MAB북한위원회) 위원장에게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제안하는 공식 서한을 유네스코를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EABRN을 활용해 보기도 하였다. 몽골, 러시아 등에서 열린 EABRN 회의에 참가하여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남북한 회의 참가자들 간의 비공식 자리에서 공동 추진을 제안하고 협력을 구하였다. 그 외에 유네스코와 MAB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2004~2005년 환경부는 DMZ 일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대책과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하였다. 두 가지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방식, 즉 남북한 공동지정 추진 방식과 남한 개별 지정 추진 방식을 검토한 후, 남북한 공동지정 추진 방식을 택하였다. 남북협력 의제로서 DMZ의 상징성과 생태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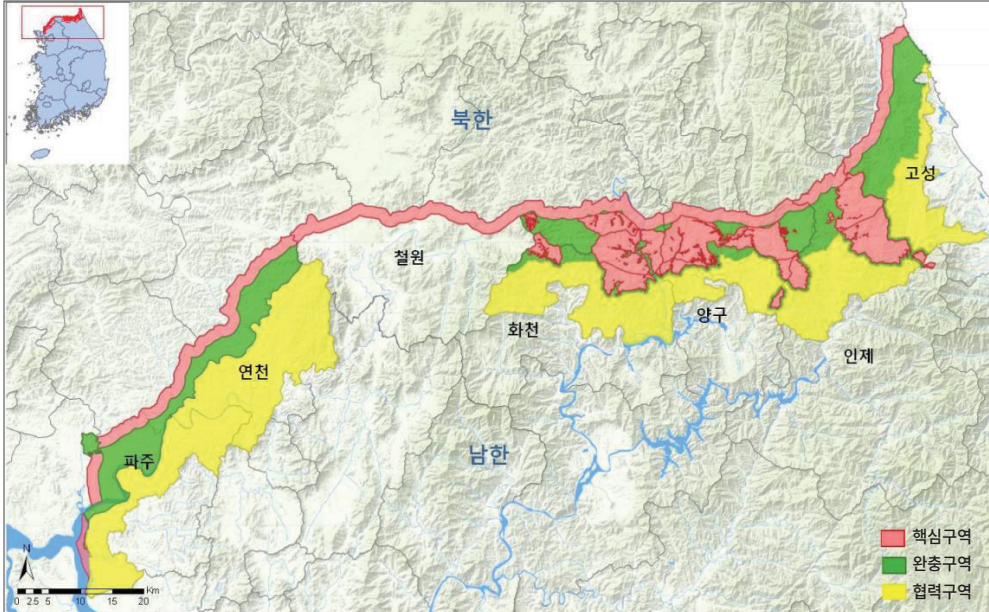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국제사회의 여타 DMZ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나 제안에도 평화협정 체결 등 정치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였다. 북한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조금도 진전을 보일 수 없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 전략임이 드러났다.

남한 내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으로 변화

남북한이 함께 DMZ 내부와 인접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가운데,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DMZ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009년 남측 DMZ와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DMZ 평화생태공원과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런 흐름에 따라, 환경부는 2009년 12월 DMZ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역 안을 마련하고, 2011년 3월 기존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전략을 수정한 ‘관계기관 합동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남한이 남측 DMZ, 민통선지역, 접경지역 일부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북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2011년 9월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었다. DMZ가 처음 국제적으로 보호지역 신청·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신청지 명칭은 ‘DMZ 생물권보전지역 (Korea DMZ Biosphere Reserve)’이었고, 신청 범위와 면적은 경기도 2개 시군(파주시, 연천군)과 강원도 5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2,979km² 이었다. 남측 DMZ와 민통선 지역의 법정보호지역을 핵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 2011년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용도구역도

■ 2011년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의 결과와 시사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제24차 회의가 2012년 7월 11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에 대해 보류(deferral) 결정이 내려졌다. 보류 사유는 위 그림의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철원지역의 핵심구역(DMZ)에 인접하여 완충구역이나 협력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 설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날 ‘MAB 국제조정이사회’ 회의장에서는 수십 년간 이사회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의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여부 권고안을 대부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여 그대로 결정한다. 하지만 DMZ 신청 건을 두고 한 시간 넘게 열띤 논의와 공방이 벌어졌다. 북한 대표단이 유엔사령부의 서명 부재와 정전협정 위반을 문제 삼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남한 대표단의 반박이 여러 번 오고간 것이다.

보류 결과를 두고 국내 언론과 일부 민간단체는 “정부(환경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하였다. 철원군의 반대(지역동의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지정 신청을 밀어붙였고,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받고 북한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성과에만 급급해 남북한 공동추진을 하지 않고 남한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하였다.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철원지역의 용도구역 문제로 보류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조정이사회의 의결 전 단계인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의 심의과정(2012년 3월)에서 이 용도구역 문제가 이미 검토되었다. 자문위원회는 군사적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민통선지역의 규제가 완충구역과 같은 실질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추가보완 요청 없이 지정승인을 권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용도구역 부적합이 지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반대를 둘러싼 남북한 간 논쟁이 과열되자 정치적 갈등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용도구역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된 보류결정문에는 용도구역 문제만 지적되어 있고 북한의 반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음으로, 북한 대표단이 문제 삼은 유엔사령부 서명부재와 정전협정 위반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에는 남측 DMZ가 핵심구역으로서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 어떠한 다른 활용은 하지 않고 그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대표단은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며 신청서에 유엔사령부 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정전협정은 군사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생태계보전과 같이 그 외 분야의 의제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응하였다. 한편, 유엔사령부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준비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중립적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신청서 제출 전에 서명을 요청하자 공식적 서명은 불가하다고 대응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은 결국 지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DMZ 일원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교훈과 시사점을 남겼다.

첫째, 북한의 입장과 대응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DMZ는 군사적 의미만 가지며 평화협정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있어야만 생태계보전 등 다른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사령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 간 합의로 관리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추진된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연결 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실상 DMZ 사안이 남북한 간의 협의와 결정에 따라 다루어졌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북한이 DMZ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정전협정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내세운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른 정치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악화된 남북관계가 본질적인 이유라고 봐야 한다. DMZ와 관련한 남북협력은 큰 틀에서 남북한 간 정치적 관계가 완화되지 않으면 진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입장과 대응에 관한 것이다.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와 MAB 국제조정이사회의 초기 논의 과정에서는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의 용도구역(철원지역)이 문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군사적 목적의 통제·관리에 따라

생태계가 보전되고 있는 DMZ와 민통선지역의 특수성이 국제기구(유네스코 MAB)에서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핵심구역과 접하여 완충구역이나 협력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높은 산 등이 실질적으로 핵심구역을 보호하는 완충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들이 여럿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DMZ의 보전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전대책이 될 수 없다. 우선 남측 DMZ와 생태적으로 중요한 민통선 지역이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보전 목적의 법적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지지 기반에 관한 것이다. 2011년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DMZ의 보전과 국내외적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인근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 지역주민의 참여·협력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부족했다. 그 결과, 철원의 민통선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보류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형성되었다. MAB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의 극심한 반대로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지정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국내 여론의 지지 부족(철원군에 완충·협력 구역 부재, 국내 민간단체가 유네스코로 지정 반대 서한 송부)은 지정 보류의 좋은 명분이 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주 목표로 한다. DMZ를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전략은 DMZ 내부의 보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해야 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정부를 신뢰하고 실질적인 민관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했다.

■ 2018년 지자체 주도로 DMZ 일원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보류된 사유로 작용한 지역사회의 이해·참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2013~2017년 경기도와 강원도의 7개 시·군 접경지역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인식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민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원도(고성, 인제, 양구)에서는 DMZ생물권학교, DMZ생물권시범마을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한 마을발전계획을 만드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DMZ 주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을 3년간 운영하였다. 주민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은 협동조합 등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교육의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몇 년간 교육이 지속되자 일부 주민들은 이제 교육만 하지 말고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인식 증진 성과에 힘입어 강원도와 연천군은 2017년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9월 DMZ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두 건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었다.

이들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2011년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신청과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첫째, 2011년 신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동쪽부터 서쪽까지 DMZ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한 것인데 비해, 2018년 신청은 접경지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두 개 생물권보전지역을 별개로 신청한 것이다. 둘째, 2011년 신청은 DMZ 남측 구간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구역에 핵심구역으로 포함되었으나 2018년 신청에서는 DMZ 내부가 포함되지 않고 민통선 지역의 법정보호지역 만을 핵심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마침내 2019년 6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1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강원생태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 결정되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총면적 182,815ha로 동쪽의 고성부터 인제, 양구, 화천, 철원까지 5개 군의 민통선지역과 접경지역 일부가 연결된 생태 네트워크 형태이다.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임진강이 가로지르는 연천군 전체를 지정범위로 하고 총면적은 58,412ha이다.



<그림 5>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의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편치볼 전경

사진: 강원도청



<그림 6>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임진강변 주상절리

사진: 연천군청

맺는 말

“자연은 국경을 모른다.(Nature knows no borders.)”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국경으로 나뉜 하나의 생태계를 인접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협력하는 곳이다. 국경을 넘어 인접 지역사회 간의 접촉·교류가 늘어나고 평화의 메시지가 지역사회 내부와 외부로 확산된다. 생태계보전 협력의 과정과 결과로부터 사회적 평화가 증진된다. 그래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국경을 초월한 생태평화 협력의 장이다. 더 나아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지정하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의 생태평화 협력의지가 국제적으로 널리 공표되고 협력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발전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비롯한 접경보호지역들이 생태평화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 곳곳에서 접경보호지역 지정 협력을 통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접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구상과 노력들이 있었으나 희망과 기대와 달리 생태계보전 협력제안과 이를 위한 노력이 적대적 정치·군사적 관계를 완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접경보호지역들은 국가 간의 관계가 크게 적대적이지 않거나 정치·군사적 대립·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또는 상당히 해결된 뒤에 지정되었다.

생태평화 접경협력의 대표 사례로 이야기되는 에콰도르-페루의 서부 아마존 지역의 경우도 그러하다. 접경평화공원(1999년)과 ‘평화의 숲’ 접경생물권보전지역(2017년)은 경제·군사 부문의 평화협정(1998년)을 체결한 후에 개선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계보전 협력이 비정치적 이슈로서 국가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생태계보전 자체만으로 군사·정치적 적대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전환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 사례도 위와 같은 접경보호지역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남북한의 DMZ는 세계 그 어느 곳 못지않게 적대적 대립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한계는 더 컸다. 얼어버린 남북한 관계 속에서 DMZ 생태계 보전협력 사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치적 관계 개선과 더불어 임·농업, 보건, 자연재해 등 가시적인 단기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행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01년 시작된 남북한 공동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정책이 20여 년간 몇 차례 변화를 거쳐 2019년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이어졌다. 이들 생물권보전지역은 DMZ 일원에 생태계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첫 국제보호지역으로서, DMZ 내부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인접한 민통선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임진강 유역과 철원평야의 두루미 도래지, 대암산 용늪, 향로봉 등 민통선지역 내 중요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은 그 자체로도 DMZ

일원 보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으며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다.

강원생태평화와 연천임진강 두 생물권보전지역의 북쪽 경계는 남방한계선이다.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개선되어 남방한계선 너머 DMZ 남측을 핵심구역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북측 DMZ 일원까지 포괄하는 온전한 'DMZ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만들어질 날을 꿈꾸어 본다. 또한 이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두 생물권보전지역이 DMZ 일원에 생태평화를 실현하는 시발점이자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참고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12),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연구(경기권).

심숙경(2012), DMZ 세계유산 등재 준비 추진 전략과 로드맵 제안서. 문화재청 내부문서.

한면희(2010), “DMZ와 생태평화의 철학”. 환경철학 10권. 한국환경철학회. 45-71쪽.

German Commission for UNESCO (2015), Management Manual for UNESCO Biosphere Reserves in Africa.

UNESCO (1995), Statutory Framework on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UNESCO (2000), Proceedings of Seville+5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amplona, Spain. 23-27 October 2000.

UNESCO (2020), Final Draft of the Technical Guidelines for Biosphere Reserves. Document of the 32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the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 27-28 October 2020.

Vosdes du Nord-Pfälzerwald Biosphere Reserve (2015),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Meeting on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Liebfrauenberg/Goersdorf, France. 2-5 June 2015.

UNESCO MAB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biosphere/wnbr>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이선경(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험실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 간 회의는 1968년 유네스코가 주최하였던 ‘세계생물권회의’로, 이후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탄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회의의 결과 유네스코는 1971년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을 출범시켰는데, MAB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초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MAB에서 최초로 수행한 사업은 지구의 주요 육상, 연안, 해양 생태계를 대변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그 내부에서 유전자원을 보호하며 연구, 모니터링, 연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이 지정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다. MAB의 핵심은 지역사회, 과학계, 국가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요식업계, 관광업계 같은 민간부문의 대표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은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MAB의 기본적인 철학을 반영하여 ‘인간을 생물권의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으로 강조하고, ‘인간의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연구, 조사,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실현해 왔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은 보전, 발전, 지원의 3가지 기능이며,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 등 3가지 용도구역을 기반으로 한다. 보전 기능은 보호가 필요한 경관과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를 보호, 유지하는 것이며, 발전 기능은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을 증진한다. 지원 기능은 시범사업, 연구와 모니터링, 교육, 정보교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두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결합시킨 육지 및 연안, 해양 지역으로, 지리학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면서 그와 동시에 지자체, 지역공동체 등이 협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적용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을 잘 보전함으로

써 지속가능한 경제적 혜택을 얻고, 그 이익을 다시 생물다양성 보전에 활용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델 지역이 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에는 자연적, 인공적 요소와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윤리적, 미적 요소가 혼재한다. 그러다 보니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이들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인간과 자연의 갈등, 인간과 인간의 갈등, 보전과 발전의 갈등, 국가와 국가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 나아가 갈등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 보다는 이 갈등이 가능한 한 모든 주체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도록 해결하는 교육, 즉 평화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평화교육의 가능성과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핵심 목표와 도전 과제는 우리의 미래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험실인 동시에 환경적, 사회적 학습을 위한 실험실로서 기능하기에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평화교육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이를 위한 세계적 논의와 노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서였다.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불리는 이 문서에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 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대중적인 빈곤, 인구 성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위협의 대안으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었지만, 이외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생물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갈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그 개념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범위 모두를 포괄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한 두 개의 축은 여러 주체 간 형평성(equity)과 지구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쟁점이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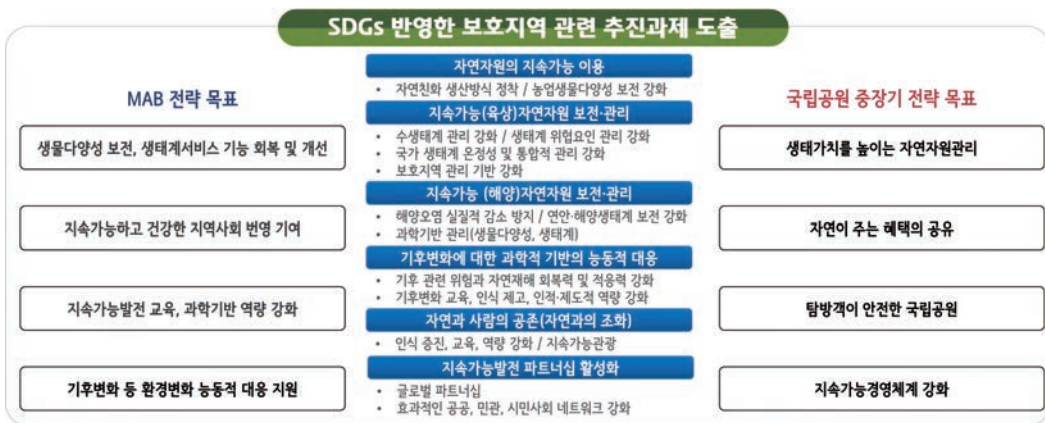
<표 1>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내용

SDGs	부문	목표	주제
총괄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
부문별	사회발전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식량/농업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보건/건강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포장	교육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젠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주거
		환경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에너지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기후변화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해양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환경
	부문별	경제발전 목표 (1, 2, 17도 관련)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경제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불평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소비
이행기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거버넌스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이행수단, 글로벌 파트너십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이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표 1 참조),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던 빈곤, 의료, 교육 등을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함께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을 통해 특정 지역, 사회, 국가 나아가 세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평화와 파트너십은 다른 3개 영역과 긴밀히 연계된다.

생물권보전지역과 국립공원 같은 보호지역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관련성을 탐색한 허학영은 2017년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10개의 목표(SDG 2, 4, 6, 8, 11, 12, 13, 14, 16, 17)와 세부 목표 32개의 깊은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국가계획과 국립공원 중장기 계획 등을 검토한 후 6개 분야 15개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국내 보호지역 관련 추진 영역은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지속가능 (육상) 자연자원 보전-관리, 지속가능 (해양)자연자원 보전-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능동적 대응, 자연과 사람의 공존(자연과의 조화),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활성화



<그림 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국내 보호지역 관련 추진 영역과 과제

출처: 허학영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보호지역.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p 68-88.

자연 자원 보전·관리, 과학적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응, 자연과 사람 공존,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활성화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연구에서 확인된 10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도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은 교육이다.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한 이래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고방식과 실천의 변화가 지역적·지구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였다. 의제21의 36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교육, 대중 인식, 훈련 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특히 강조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정의 역시 지속가능발전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활용가능한 정의 중 하나는 유네스코가 2005년 발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 이행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실무작업단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의로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사회, 환경 경제 영역의 상호관련성, 세대 간 형평성, 지구적 정의를 인식하고 현 사회에 대한 성찰적 태도, 가치, 실천을 바탕으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가치, 실재를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은 형식 교육으로 지칭되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 대중 매체 등에 의한 무형식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어떤 맥락에서든 간학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련성은 여러 문서에서 강조되고 있다. 2015년 10월 유네스코에서 최종 승인된 MAB전략(2015~2025)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요 전략목표 3(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과학,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역량 구축 촉진)에 포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수·학습에 주요 지속가능발전 쟁점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새로운 기술, 역량 및 가치를 습득하여 행동을 변화 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행 할 수 있도록 동기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2016년 3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채택된 리마행동계획(2016~2025)에서도 전략적 실천 영역 A를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 모델로 기능하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세부 영역 A4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와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연구, 실질적인 학습과 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A4.2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에 관한 세계 네트워크 설립도 제안하고 있다.

MAB한국위원회도 2015년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2016-2025)’을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향후 우리나라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이 실행해야 할 주요 활동방향으로 제시하며 이를 “생물다양성 등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이슈를 교육과 학습에 포함시켜 모든 이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델 지역인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인 장이 될 수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체들은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배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MAB전략은 3대 비전 중 하나를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실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로 설정하고, ‘목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역량 강화, 인지도 제고’에서 관련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실행과제 3.1부터 3.4까지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표 2>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2016~2025) 목표 3의 실행과제

목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역량강화, 생물권보전지역 인지도 제고				
번호	실행과제	추진주체	파트너	기간
3.1	지역 특성과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인식증진, 지역주민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고 각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실행한다,	MAB한국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중앙부처	중기
3.2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질 높은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행되도록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인증, 지역 교육청 협력 등을 추진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교육기관	중기
3.3	생물권보전지역 내 유네스코학교 수를 늘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기관	단기
3.4	토착·전통 지혜를 활용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	생물권보전지역, MAB한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기

출처: MAB한국위원회(2015).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2016-2025)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관계를 탐색한 이동기는 2020년 독일과 한국의 평화교육 연구자인 귄터 구겔(Günther Gugel)과 이삼열의 평화교육에 관한 설명에 주목한다. 구겔은 평화교육이 ‘평화의 이상적 상태에 대한 인지 능력과 지식 축적’ 같은 ‘평화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갈등 상황을 비폭력적이고 이성적이며 문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의 함양’을 추구하는 교육이며, 그런 갈등 조정과 해결 능력이 바로 “평화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1991년 이삼열에 의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가를 의식화하는 교육”이며 그와 동시에 ‘존재하는 갈등 관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된 바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에서는 ‘갈등 상황에 대한 비폭력적 접근’이 강조되며, 평화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평화문화는 엘리스 볼딩(Elise Boulding)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가 차이와 갈등에 평화롭고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관계와 제도들의 총체”로서 사람들에게 “권력구조에 의거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강화하는 정체성과 태도, 가치와 신념과 행동”을 포함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 평화문화를 고취하는 것은 이 지역의 존재 이유와 긴밀히 관련된다. 즉,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평화문화를 고취하는 교육인 평화교육과, 환경과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을 연계하고 여러 주체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본질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째 목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17개의 목표 중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표를 포괄하는 목표로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 자체가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평화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교육 접근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은 여러 층위로 연계 가능할 수 있다. 이의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앞서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루시 소베(Lucie Sauvé)는 2002년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다양한 차원을 구분하였으며, 이로부터 환경을 이해하는 7가지의 해석을 제안하였다. 감상, 존중 및 보전해야 할 자연으로서의 환경, 관리, 공유되어야 할 자원으로서의 환경, 피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환경,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되어야 할 시스템으로서의 환경, 익숙해지고 개선되어야 할 삶의 장소로서의 환경, 장기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생물권으로서의 환경, 활발하게 참여해야 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로서의 환경 등이 그것이다. 또한 소베는 “환경 간 관계는 그 맥락에 크게 달려 있으며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즉, 이것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보완적인 차원을 통해 표현된다. 한 가지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환경교육은 완전하지 않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학습 목표와 내용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할 수 있다. 즉, 생물권보전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요소 이해, 이들 사이의 관계, 생태계 내 자연적 과정과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 생물권보전지역과 개발의 상호 작용 등의 관련지식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에는 많은 경우 보존된 자연 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대상으로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태계의 조직과 특성, 생물지구화학적 순환,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또는 생물-문화다양성, 생물-문화다양성과 경제적 측면, 다양한 생물 유형, 다양한 생태계 유형, 생태계서비스 등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현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쟁점도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중요한 교수·학습의 주제가 될 수 있다.

환경문제 발생과 결과, 오염 발생, 침식, 사막화, 산림파괴, 해양 위협 요인, 도시화와 관광 등에 따른 압력 등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쟁점들이다. 이들은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을 지지하는 인간과 인간,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쟁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생활양식이 현저하게 변화하였고, 재화의 생산 및 소비 양상이 지속 불가능해져 지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졌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인구가 2배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 에너지 소비는 5배나 증가하였다. 성불평등, 아동 노동 착취, 동물 학대, 멸종위기종 대상 동물 실험, 기후변화 등은 이러한 인구 증가와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부작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 문제는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허황된 성장 지표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태계 서비스나 사회적 서비스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아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간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교육 부족 역시 환경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인 규모로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 시민들의 지역적인 참여만으로도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 이는 “지구를 생각하되, 지역적으로 실천하자(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슬로건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여러 캠페인에 사용되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생태시민성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사적인 영역의 실천이 공적인 영역과 연계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습 환경 및 도구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험실, 교육 환경 및 장치와 수단, 즉, 학습 과정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맥락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비료 사용, 토양 오염, 물 오염, 그리고 농산품의 품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화석 연료는 어떻게 재생 가능한 연료로 대체될 수 있을까? 소비자가 어떻게 푸드 마일리지, 물과 에너지 사용, 동물학대 여부, 노동 조건 같은 쟁점을 고려하여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농민, 관광가이드, 경영자, 도시 계획가, 그리고 시민으로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같은 질문은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지속가능성, 형평성과 긴밀히 연계된 질문들이며,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역량을 강조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동안 각 나라에서 수행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에서 가장 부각된 역량은 ‘미래에 대한 사고,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 복잡성의 이해와 시스템적 사고,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협상, 전체 합의 구축, 위기·위험에의 대처,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 가치를 파악·명시하는 능력, 변화의 계획과 관리,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다양한 맥락의 학습 적용 능력 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UNESCO, 2009). 2017년 발간된 유네스코 문서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시스템사고 역량, 미래 예측 역량, 규범적 역량, 전략적 역량, 협력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자기 인식 역량,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 등 8가지를 들고, 이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과정에 포함되기를 제안하고 있다(UNESCO, 2017). 이러한 역량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여러 쟁점에 접근하거나 앞서 제기한 지역과 연계된 실제 세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학습되고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환경적, 사회적 학습을 위한 실험실로서 기능하기에 이상적이다. 전 세계의 청년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보전 지역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훈련된 담당자가 적절한 안내를 제시하면 이들이 부여받은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타인과 건설적으로 일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형성하고 논쟁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이나 거주민 뿐만 아니라 방문객과 특히 청소년들이, 모든 개인은 특정 공간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을 인식, 식별, 해소하는 데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한다.

세 번째는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생물권보전지역을 포괄할 수 있다. 지역내 자연적 요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그것이다. 여기서 지역 주민들은 자연 보호, 삶의 질과 지역 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감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의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그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 인권, 시민성, 평화, 민주주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 건강, 성평등, 문화적 다양성,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 소비와 생산의 지속 가능한 패턴 등의 필수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이들 주제나 쟁점이 지역적 수준, 세계적 수준 모두에서 자연적 시스템과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특성을 강조한다.
- 지역적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 발전 방법 등을 함께 보여준다.
- 지역 주민이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학습자·방문객이 특정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와 방문객에게 그들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쾌한 경험을 제공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의 설립과 확대,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생물권보전지역 및 다른 보호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물권보전지역이나 다른 보호지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안내 또는 교육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하고, 공원 관리인 등 관리기관의 직원 간 ‘상호작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야외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장기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은 당일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 전 적절한 준비와 방문 후 사후 지도 활동을 포함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과학자, 관련 이해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보호지역에서의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인도 두드와 국립공원과 RCE 럭나우¹⁾

인도의 두드와국립공원(Dudhwa National Park)은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국립공원으로 인도 네팔 국경선 근처의 인도 우타 프라데쉬, 라킴푸르 계리 지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보호지역으로 히말라야 산기슭 아래 갠지스강 유역의 테리아 아크 경관 지대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마지막 요새라고 할 수 있다. 두드와 숲에는 타루족으로 알려진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숲의 자원을 음식, 가축사료, 약재로 활용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작은 목재로 오두막을 짓고 농업 도구, 공예품, 목재 이외의 자원으로 생산한 물품을 제작하며 숲에서 사회적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부족 공동체는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삶을 영위해 왔으며, 항상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문화는 1997년 두드와 숲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 이곳에서 살아온 타루족에게도 적용되어 왔다.

1) 인도 두드와 국립공원과 RCE Lucknow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아래 Preeti(2012)의 글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며, 이선경외(2013)에 사례로 포함된 바 있다.

출처: Preeti, R. Kanauia(2012). Community-national park collaboration for ESD in relationwith indigenous knowledg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Proceedings of 2012 WorldConservation Congress, Conservation Campus No. 0130, pp 50-53.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부족공동체의 자원 활용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야생 동물과 사람을 포함하여 숲 주변 지역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부족 공동체는 시장경제와 현대 기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숲의 자원에 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족공동체 규모가 커지고 숲의 자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숲에 영향을 줌에 따라 인간과 야생 동물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빚어지면서 공원 당국과 지역공동체는 충돌하기 시작했다.

인도 환경교육센터(CEE)는 1984년 인도 정부의 환경 산림부와 NGO인 네루 개발 재단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환경과 지속가능성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5년 CEE는 두드와 국립공원의 일부 마을에서 교육과 보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 이용가능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리, 생계 증진, 에너지 절약 등에 초점을 맞춘 참여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해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협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CEE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 대학 고등연구소(UNU-IAS)가 인정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센터(RCE) 럭나우(Lucknow)와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CEE는 일련의 홍보와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원 관리자, 이해당사자, 타부족 공동체 사이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회의와 논의를 통해 자원 현황, 기존 시스템 및 실천, 보전 관련 이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기초평가는 사람들의 식량, 가축 사료, 땀감 확보에서 공원 의존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기획회의를 열어 원주민 공동체의 생계를 강화하였고 역량 구축과 교육, 체험 답사를 통해 원주민의 기술을 증진하는 자연 자원 관리 활동 계획을 세웠다. RCE 럭나우를 중심으로 대안 농업 교육, 대안 에너지원 활용 교육, 여성을 위한 수공예 기술 및 마케팅 교육, 가축의 번식 및 축산 관리에 관한 교육, 자녀들을 통한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인간의 공존: 호주 빅토리아 공원과 지역의 다문화공동체의 협력²⁾

호주의 빅토리아공원은 199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원은 덴마크 국토 면적과 맞먹는 규모로 빅토리아 주의 18%에 해당하는 400만ha의 광활하고 다채로운 지역을 포함한다. 국립공원과 도심공원, 야생지역, 빅토리아 해안의 70%가량이 빅토리아공원에 속하며 해양국립공원과 해양보호지역도 관리하고 있다. 빅토리아주는 다문화사회인 호주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이다. 다수의 외국

2) 호주 빅토리아공원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아래 Mary-Lou Dixon(2012)의 글을 기초로 빅토리아국립공원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이선경외(2013)에 사례로 포함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출처: Dixon, M (2012). Creating a Connection of ESD to National Parks for Multi-cultural Communities, Proceedings of 2012 World Conservation Congress, Conservation Campus No. 0130, 142-148.

인 공동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빅토리아 주민은 200개 이상 국가에서 이주해 왔으며, 18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호주로 온 대다수 이주민은 모국에서와 매우 다른 토지관리 정책을 경험한다. 이주민에게 익숙한 농업, 어업, 수렵 관련 여러 가지 관행이 호주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에서는 갯벌에서 어패류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호주에는 조개 채취가 금지되는 구역이 있다. 한편 2003년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 인구 20%가 한두 가지의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지니고 있다. 빅토리아주 장애사무국(the Office of Disability)은 장애가 이를 가진 사람과 이들을 둘러싼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본다. 호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2021년까지 호주 인구의 25%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의 요구와 필요성을 파악한 빅토리아 공원은 지역 사회의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공원 발견하기’(Discover Parks)와 캠프(Camping on Country)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토착적 지식과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작업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이러한 주제가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방문객에게 광대한 빅토리아공원을 소개하는 ‘공원 발견하기’ 프로그램은 특정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구성원들이 공원 방문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이들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누리도록 돕는 목적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공동체와 맺은 파트너십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 즉 장애인, 청년, 노년층,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둔다. 대다수 참여자는 전에 국립공원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으며 공원에 오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들 공동체는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비만 같은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크다.

또한 빅토리아 공원은 자원봉사자가 진행하는 ‘이중 언어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멜버른 주변의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공원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인데, 영어 이외의 언어로 다문화, 다언어 공동체에 빅토리아주의 해양공원과 육상공원, 동식물을 안내한다.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언어는 아랍어, 아시리아어, 중국어, 칠레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에티오피아어, 힌디어, 한국어, 스페인어, 수단어, 시리아어, 터키어 등이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이주민은 자국어로 진행되는 공원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국립공원은 물론 지역 사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안전하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빅토리아공원은 최근 중증 장애인이 국립공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명 ‘어디든 가는 휠체어(all-terrain wheelchairs)’를 산악형과 해양형 공원 4곳에 도입했다. 장애를 입은 후 산과 바다를 거의 가보지 못한 장애인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휠체어를 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외에 장애인을 위한 숙박시설, 뇌손상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공한 빅토리아공원은 2011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공로로 ‘호주 장애인 상(National Disability Award)’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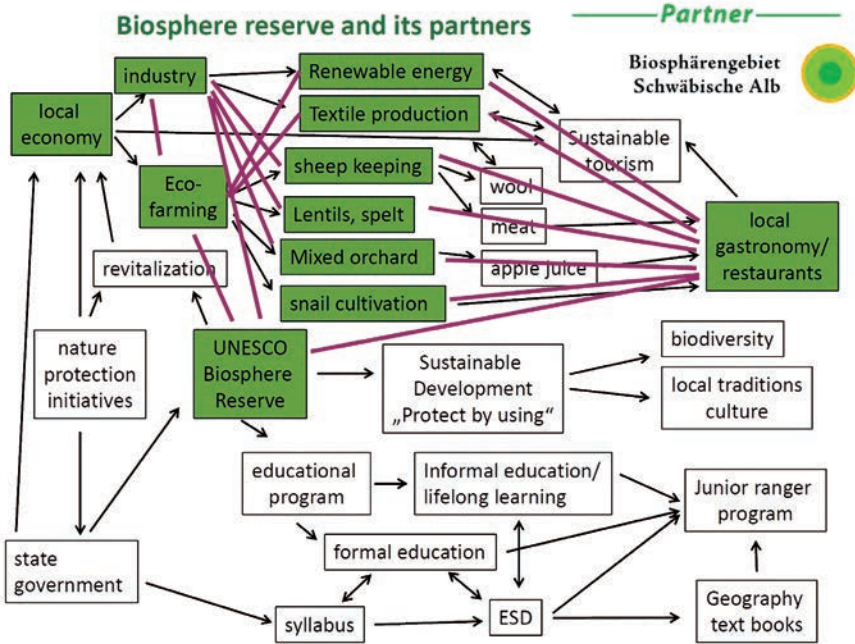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다층화된 교육 요구에 부응하고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등 좀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빅토리아공원은 주 정부 및 다양한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이들 네트워크에는 이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애인 및 청년, 노년층,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생물·문화다양성, 전통과 현대의 공존: 독일 스바비안 알브 생물권보전지역³⁾

독일의 스바비안 알브(Swabian Alb)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에 있는 200km 정도의 쥐라기 기원의 낮은 산지 지역으로 북서쪽의 슈투트가르트의 도심 지역과 남동쪽의 다뉴브강 유역사이에 위치한다. 2009년 지정된 스바비안 알브 생물권보전지역에는 약 850km² 면적에 약 15만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핵심구역은 3%, 완충구역은 45%, 협력구역은 55%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던 덕분에 19세기 말 새로운 무기 개발로 새로운 훈련 지역이 필요하게 되자, 1895년 뮌싱겐Münsingen 군대 훈련장이 구축되었고, 계속 사용되다가 2005년 문을 닫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거의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지역과 18~19세기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이 공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상과 동물상이 풍부한 지역과 탄약으로 오염된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많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 특산물인 렌틸콩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달팽이를 복원하여 길러 판매하고 음식으로 이용한다. 양을 방목하여 지역의 울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는데, 전통적인 모직 섬유를 이용하되 현대의 새로운 스타일을 접목한 상품을 만들고 있다. 전통 밀의 한 종류인 스펠트밀도 재배하고, 과수원을 통해 사과를 수확하여 사과 주스를 생산하며, 여객 칸과 화물 칸을 동시에 단 기차가 달린다. 이 스바비안 알브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의 연계는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3) 본 사례는 일본 릿쿄대학교에서 개최된 지역 재생 관련 국제 포럼에서 발표된 Hoffmann(2017)의 자료와 Müller *et al.* (2019) 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림 2> 독일 스바비아 알브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 파트너십

출처: Hoffmann, T. (2017). UNESCO Biosphere Reserve Swabian Alb in Germany.

이 지역에서의 생물·문화다양성의 연계는 교육을 통해 더욱 증진되고 있는데, 이들 교육에는 자연보호, 지속가능발전교육, 마케팅과 대중 관계, 가치 부가 지역 마케팅(농업, 양, 보존, 혼합 과수, 포도주 양조장 등), 숲·나무·사냥, 관광과 요리법, 지역 개발·계획과 교통, 환경과 기후보호, 역사문화유적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임업, 이 지역의 돌과 그 영향, 역사부터 미래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 연례회의, 미래 워크숍, 이곳저곳의 자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교육적 휴일, 자연과 상호작용 경험, 자연이 필요한 아이들, 지역 교육과정에 생물권보전지역 통합, 교육 네트워크’ 등 다양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스바비아 알브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 개척, 생태관광 강화, 경제 하락 정지, 자연보호, 추동력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접경 지역 서로 다른 국민의 공존: 몽 비소 생물권보전지역과 프랑스 보주뒤노르 (Vosges du Nord, 북 보주)-독일 팰처발트(Pfälzerwald, 팔츠 숲) 생물권보전지역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국경에 걸쳐 사회적, 생태학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협력 프로젝트이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2020년 현재 21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주로 유럽, 아프리카, 남미가 대부분이며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대부분 2~3개 국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라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DMZ)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DMZ에 근접한 남북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총면적 18만2.815ha로 고성, 인제, 양구, 철원, 화천 등 5개 군의 민통선 지역과 접경지역 일부가 연결된 생태 네트워크 형태로 2019년 지정되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국가와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생태학적으로는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이 필수적이다.

2014년 지정된 프랑스의 비소산(Mont Viso)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알프스산맥과 지중해사이의 빙하 권곡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총면적 42만 7,080.7ha이며, 인구는 2020년 현재 2만4,975명이다. 비소산의 생태적 특성은 고산지대의 건조한 바위산으로부터 스위스 소나무(Pinus cembra)가 분포하는 지역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어 Natura 2000 등 여러 자연 보전 단체를 통해 인지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사람들의 활동은 주로 고산 농업, 임업, 수공예품 등이 주를 이루며, 관광산업, 약초와 아로마 식물은 중요한 경제적 요소이다.

비소산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운동을 잘 보여준다. 이 지역의 집단 이익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길(Ener'guil)은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가입과 지역 보조금 등을 이용하여 태양광패널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패널은 소유주의 승인을 받고 약간의 임차료를 내고 공공 및 개인 건물의 지붕에 설치되며, 이 태양광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는 20년 고정 가격으로 프랑스 전기회사EDF에 판매되는데, 전기 판매 수익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모든 이익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따로 보관된다. 시민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각 주식은 50유로의 가치가 있으며 주주는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200주가 필요하다. 재정적 약속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집 지붕을 이 협동조합에 제공 할 수 있다. 지붕이 경사, 방향, 레이아웃 및 태양 노출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50m²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기술과 시간을 에너지에 제공한 매니저 등 약 20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등에 따라 초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현재 이미 10 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생산된 재생 가능 에너지는 40가구의 전기 수요(온수 및 난방 제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 비소산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성공 요인은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사한 활동이 다른 지역에서도 전개되고 있다.⁴⁾

4) 비소산 TBR과 보주뒤노르(Vosges du Nord, 북 보주)-펠처발트(Pfälzerwald, 팔츠 숲) TBR 사례는 Roth A. (coord.), (2017). #ProudToShare - Good Practices in French Biosphere Reserves. Toulouse, MAB France and AFB.에서 발췌하였음.

보주뒤노르(Vosges du Nord, 북 보주)-펠처발트(Pfälzerwald, 팔츠 숲)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1998년 지정되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지대에 위치하면서 물, 사암, 숲 등 세 가지 자연적 특성을 공유한다. 총면적 30만1,800ha이며, 약 24만명이 프랑스와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두 국가 간 경계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매년 열리는 농산물시장인데, 이는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서 번갈아 열리며, 모두 MAB 프로그램의 가치를 공유하는 현지 농부의 전문성과 생산 과정을 보여준다. 보주뒤노르(Vosges du Nord, 북 보주)-펠처발트(Pfälzerwald, 팔츠 숲)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열리는 국경 농산물시장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농민들이 40여 명이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한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지역의 공동체와 유산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농산물 시장에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 통합 농업을 장려한다. 지역 교류와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점상으로 기여하는 농부들은 매년 6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생물권보전지역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농산물시장에 참여할 다음 생산자를 선택하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날짜와 위치를 결정한다. 후보자가 농산물시장에서 장려하는 가치를 공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적 노점상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선정 과정을 알리는 특정 기준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장 방문을 기반으로 한 평가는 전문가가 수행한 다음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선출된 대표, 농부 대표와 논의한다. 농산물시장은 프랑스에서 연 2회(국경 도시 1곳 포함), 독일에서는 연 3회 개최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시장을 여는 지역사회와 대화 채널을 조직하고 농산물시장의 레이아웃 및 설치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중개자의 도움을 받아 이벤트를 홍보한다. 시즌이 끝나면 연례 평가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미래 시장 조직을 조정하고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되 매년 개선한다. 이 국경 농산물시장의 성공 요소는 환경 보호에 전념하는 농부들의 참여 및 지원, 1999년부터 직접 판매 및 현지 생산 촉진,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프랑스와 독일 농부 간의 보완 관계, 동일한 소비자 습관을 갖지 않는 프랑스와 독일 방문자 간의 보완 관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프랑스 보주뒤노르-독일 펠처발트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온 약 50명의 전문가와 협력 프로젝트 담당자 등이 모여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접경지역 협력을 위한 전략과 쟁점이 논의되었다. 타운홀 미팅과 그룹 토론, 지역 답사 등을 포함한 이 워크숍에서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강점과 가치, 협력의 어려움과 쟁점, 우수 사례와 가능한 해결책,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와 쟁점

구분	내용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강점과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관용, 희망의 메시지 • 공동의 비전과 꿈 설정 • 협력 촉진 • 자연 보전 강화 • UNESCO 지정을 통한 인지도 상승 	
협력의 어려움과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어려움: TBR의 정의와 목표 이해 다름 • 갈등 상황에 있는 지역민을 장려하고 동기 부여하기 • (국가 수준의) 정책적 지원 부족 • 예산 부족 • 공동의 비전과 프로젝트 구축하기 • 국가 간 법적, 제도적 차이 • 국가 간 문화적, 언어적 차이 • MAB 본부와 국가 사무국의 지원 부족 • 자연보호를 위한 로비 부족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위한 보조 필요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의 어려움 - 거버넌스, 실무자 등 	
우수 사례와 가능한 해결책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소통 • 정기적 회의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청중과 의사소통
	협력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활동가를 위한 의사소통 도구 개발 • 여러 영역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공동 프로젝트 기회 제공 • 처음부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TBR 거버넌스에 포함 • 토지 이용 갈등 발생시 중립적인 촉진자로 중재 •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 활동 개발
	접경생물권보전지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와 공동 관리 구조 구축 •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실무자 확보 • 효과적 의사소통 위해 정기적인 대면 회의

출처: MAB France (2015).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s. MAB France. 요약 및 정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논의를 통해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평화와 관용,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고, 공동의 비전과 꿈을 설정할 수 있으며, 두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고, 자연보전을 강화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지정을 통한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됨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두 국가 간 의사소통 어려움, 국가 간 법적 제도적 차이, 문화적·언어적 차이, 정책적 지원 부족, 예산 부족, 공동의 비전과 프로젝트 구축하기, 거버넌스의 어려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 협력 참여 유도 방안, 접경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전략 등이 제안되었다.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습과 논의들은 접경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권보전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평화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협력과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 장소'이다. 갈등 예방 및 생물 다양성 관리를 포함하여 사회 및 생태 시스템 간의 변화와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제 간 접근 방식을 시험하는 사이트이다(UNESCO, 2020).

유네스코 MAB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 고유의 자연생태계, 역사 문화 자원을 보전함으로써 인간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보호지역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설명에도 잘 표현되어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평화교육은 이 정체성을 발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생물권보전지역에는 자연적, 인공적 요소와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윤리적, 미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으며, 공원 시스템, 관광 시스템, 생태적 시스템, 지역사회·주거 시스템 등이 서로 얽혀 있다. 이들 간의 관계와 상호의존성은 전반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각 시스템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하나 이상의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저마다의 각기 다른 관점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두 그룹이나 개인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층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최대화하는 목적과 과정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서로 다른 조직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정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공동 노력은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 네트워킹, 조정, 협동, 협력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보호지역에서의 협력을 연구한 그레이는 1989년 '협력(collaboration)'을 가장 높은 수준의 공동 노력으로 제시하고, 이는 이해당사자 각자가 지닌 차이를 건설적으로 다루어 해법을 만들어 내고 의사 결정 주인의식을 가지며 조직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환경적 복잡성을 집단적으로 다루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협력이란 생물권보전지역이나 다른 보호지역과 같이 기본적으로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해결 과정과 여러 조직의 대응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생물권보전지역과 보호

지역에서의 여러 사례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협력이 나타난다. 인도 두드와 국립공원에서의 렉나우 RCE와 CEE와 원주민, 호주 빅토리아 국립공원에서의 지역사회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 그리고, 장애인 지원 단체, 독일 스와비아알브(Swabian Alb) 생물권보전 지역에서의 생물-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그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육의 범위를 넓혀서 이러한 협력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도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학습은 각기 다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각 개인이 모인 가운데 저마다 각기 다른,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드러내고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며, 효과적인 협동이나 협력의 과정인 동시에 결과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학습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다른 사람이나 조직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학습은 단순한 개인이나 조직의 모임을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하나의 공동체 혹은 집단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기술된 여러 사례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과 보호지역에서 인간과 자연, 다양한 인종, 개발과 보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존과 평화가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 사례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책, 사회적 협력의 기회 제공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로는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들 협력과 파트너십 과정에 정보의 제공, 커뮤니케이션, 조정(mediation) 등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 모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자와 이를 제공받는 수동적 학습자를 전제로 하는 일방향 교육 및 연수이외에도 쌍방향 의사소통, 쌍방향 또는 여러 방향의 정보교환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작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앞서 제시된 많은 사례에 포함되었던 정보의 제공, 학습, 의사소통 등이 모두 포함되는 사회적 학습을 전제하고 포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과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마지막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사례에 포함되었던 보주뒤노르(Vosges du Nord, 북 보주)-펠처발트(Pfälzerwald, 팔츠 숲)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공동의 또는 차별화된 쟁점을 탐색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이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사소통과 학습의 과정은 추후 참여한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생물권 보전지역 모두의 비약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실행자, 전문가, 관리자 등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이동기(2020), 세계시민관점의 평화교육.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 발표 자료.
- 이선경, 김남수, 주형선(2013), 국립공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립공원관리공단.
- 이선경, 이재영, 이순철, 이유진, 민경석, 심숙경(2005),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인간과생물권보전(MAB)한국위원회(2015),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2016-2025).
- 토다 기요시 저, 김원식 역(1996), 환경정의를 위하여. 서울: 창비
- 허학영(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보호지역. 유네스코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 방안 연구. pp 68-88.
- 한국환경교육연구소(2016), 생물권보전지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방안 정책 브리프.
- Dixon, M (2012), Creating a Connection of ESD to National Parks for Multi-cultural Communities, Proceedings of 2012 World Conservation Congress, Conservation Campus No. 0130, 142-148.
- Fien, J. & Tilbury, D. (2002), The Global Challenge of Sustainability, In Tilbury, D., Stevenson, R., Fien, J. & Schreuder, D. (Eds.), *Education and Sustainability: Responding to the Global Challenge*, (pp. 1-11), IUCN.
- Haughton, G. (1999),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Sustainable C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8, 233-243.
- Hoffmann, T. (2017), UNESCO Biosphere Reserve Swabian Alb in Germany.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Forum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okyo, Japan.
- MAB France (2015),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s. Toulouse, MAB France.
- Preeti, R. Kanauui a(2012), Community-national park collaboration for ESD in relation with indigenous knowledg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Proceedings of 2012 World Conservation Congress, Conservation Campus No. 0130, pp 50-53.
- Roth A. (coord.), (2017), *#Proud To Share – Good Practices in French Biosphere Reserves. Toulouse, MAB France and AFB.*
- Scott, W. & Gough, S. (2003),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earning: Framing the Issues. London, Routledge Falmer.
- UNESCO (2005),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Draft*, UNE-SCO Publishing.

UNESCO (2013),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Biosphere Reserves and Other Designated Areas*. Paris: UNESCO.

UNESCO (2015), *MAB Strategy 2015-2025*. Paris: UNESCO.

UNESCO (201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UNESCO (2020),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2030*. Paris: UNESCO.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Müller, S. M., Peisker, J., Bieling C., Linnemann, K., Reidl, K., and Schmieder, K. (2019) The Importance of Cultural Ecosystem Services and Biodiversity for Landscape Visitors in the Biosphere Reserve Swabian Alb (Germany). *Sustainability* 2019, 11, 2650; doi:10.3390/su11092650.

인간과생물권(MAB)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mab.or.kr/programme/mab01.php>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초판 1쇄 인쇄	2020년 12월 21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23일
기 획	MAB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은이	김은영 유철인 허학영 심숙경 이선경
편 집	양성우 최연수
펴낸곳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반곡동)
전자우편	mab@knps.or.kr
홈페이지	www.unesco-mab.or.kr
디자인/인쇄	신세계기획

이 책은 MAB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2020년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동 출판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MAB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MAB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때에는 유네스코(UNESCO Open Access Repository)(<http://en.unesco.org/open-access>)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MAB 한국위원회 사무국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전화: 033-769-9300

홈페이지: www.unescomab.or.kr

전자우편: mab@knps.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홈페이지: www.unesco.or.kr

전자우편: online@unesco.or.kr

